

CONTENTS

KOSCA LETTER Vol.3

코스카 레터 제 3 호



PART 1

- 1. 신년사 04
 - 표재석 _ 중앙회장
 - 김병철 _ 부산시회장
- 2. 권두사 06
 - 이현승 _ 국회의원
- 3. SPECIAL01 - 부산시회 자문변호사, 회계사 및 노무사 위촉 안내 07



2015년 Vol. 03

발행인 회장 김병철
 기고/투고 kosca21@kosca.or.kr
 편집/발행처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디자인/제작 CCA (051, 647, 5991)
 인쇄 성광정판 (051, 261, 0027)



12

PART 2

- 4. 협회소식 08
- 5. SPECIAL02 - 회원사 안내 사항 1 18
 - 건설기계 대여금지증보충제도
 - 인터넷 제증명 발급 서비스 개선
- 6. 건설공사 추주지원 및 제도개선사업 20
- 7. SPECIAL03 - 회원사 안내 사항 2 26
 - 2014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 접수 및 2015년도 시공능력평가 안내
- 8. SPECIAL04 - 건강지킴이 28
- 9. 신기술 소개 - 동양 RPF 산업(주) 30



15

PART 3

- 10. 전문건설인의 삶 32
 - 건설인 3호 박수근 _ (주)제일공사 대표이사
 - 건설인 4호 김재진 _ 영빈건설(주) 대표이사
- 11. 건설산업정보 - Part 1 36
- 12. SPECIAL05 - 소통하는 문화공간 44
- 13. 건설산업정보 - Part 2 46
- 14. SPECIAL06 - 쉬어가는 유머 52
- 15. SPECIAL07 - 회원사 안내 사항 3 54
 - 국토교통부 부실업체 조기경보 시스템 도입 및 시행
- 16. SPECIAL08 - 업무단신+1/4분기 주요일정 55
- 17. 건설관련 유권해석 및 판례 56
- 18. 회원사 질의·응답 58
- 19. 특별기고 60
 - 임남기 _ 피해갈 수 없는 BIM 파도
 - 윤경일 _ 행복과 나눔
- 20. SPECIAL09 - 그것이 알고싶다 64

PART 4

- 21. 회원사 현황 66
- 22.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 진단 및 대책 68
- 23. 건설용어 바로쓰기 70
- 24. 민원업무 처리절차 안내 71
- 25. SPECIAL10 - 2015년 별자리로 보는 나의 운세 72
- 26. 회원사 참여 마당 74
- 27. 협회 제휴카드 소개 75

01 신년사 New Year Message

“
전문건설인 여러분!
2015년 희망찬 을미년(乙未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표재석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청양의 온화한 기운을 받아 우리 전문건설업계가 어거 펴고 일 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고, 회사
의 일의 번창과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그야말로 숨 가쁘게 지나간 격동의 한 해였습니다. 건설산업의 위기와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앞에서 미래를 향한 전문건설업계의 도전은 계속되었으며, 도약과 전
진의 열망은 그 어느 해 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그 결과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용대상 확대, 소규모복합공사 적용범위 확대, 실적공사비
제도 개선 및 분리발주 법제화가 추진되는 등 법과 제도개선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전문건설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전문건설인 여러분!
새해에는 각종 경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호전되고 있고 위기 속에서 차분히 내실을 다져온
우리 전문건설업계도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되어 경영여건이 한층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
다. 하지만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국내외 환경 속에서 우리업계의 생존권을 확보하고 미
래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대한 한해가 될 것입니다.

120년전 조선은 변화의 물결에 뒤처지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지 못해 국민인 명성황후
가 암살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를 교훈삼아 우리 전문건설업계도 변화와 개혁을 통
해 다시 한 번 건설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
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전문건설업계는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경제 발전을 이끌고 도전과 개혁정신으로 위
기를 기회로 바꾼 값진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이순간은 건설경제 위기와 한파를 이겨내
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장차 협회 및 회원사의 앞날과 번영의 기틀을 다
져 나갈 기회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미래를 준비하고 도전해 나갑시다.

존경하는 전문건설인 여러분!
끊임없는 거친 파도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도전은 전문건설업계의 피할 수 없는 숙명입
니다.

앞선 자를 뒤따르던 쉬운 길을 과감히 버리고 선택과 집중, 변화를 뛰어넘는 혁신으로 험
난한 여정 속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만 우리 전문건설업계가 다시 한 번 건설산업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중앙회는 올 한 해를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원년으로 삼아 전문건설업계의 백년대계
를 준비한다는 각오로 해외건설시장 개척 등 미래를 담보할 신성장동력 발굴에 모든 역량
을 결집할 것이며, 협회 창립 30주년 행사를 통해 우리업계의 단결된 힘과 목소리를 정부
및 관계요소에 전달하는 등 더 큰 성공의 기회를 모색할 것입니다.

사람이 합심하면 날카로운 쇠를 끊을 수 있다는 '일심일덕(一心一德)'이라는 말처럼 전문
건설인 여러분도 내딛는 한걸음, 한걸음이 밝은 내일을 위한 밑거름이 된다는 확신을 갖고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을미년 새해에 회원사 여러분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01 신년사 New Year Message

“
백지 위 ‘꿈·희망·사랑
그림’ 다시 그리는
희망찬 한 해 되시길...”

김병철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회장



지난 2014년, 4월 16일 지을 수 없는 세월호라는 전대미문의 사고는 국가, 사회를 온통 회
색으로 물들이고 트라우마라는 잘 알려지지 않던 정신적 외상이라는 용어를 확산시키면
서 우리 사회 속에서 정상으로 가장된 비정상들의 상처를 쏟아 내다 급기야는 시시비비라
는 혼란으로 많은 시간을 허비 해나왔다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같은 시대적 미완의 소용돌이에 대한이야기를 일단은 단절하고 乙未年 이라는
새로 만들어진 새로운 역사책을 집어 들고 미완의 이야기를 새로운 시각으로 기록해 놓을
수 있는 단절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생각해봅니다.

이 기록은 어떤 방식이든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할 역사로 기록 되어져야하고, 乙未年 의
백지에는 새로운 꿈과 희망의 그림을 그려 넣어야하고, 우리가 부를 노래 또한 희망의 레
파토리가 담긴 사랑, 행복, 감사함, 파스함이 서려있어야 합니다. 물질에 예속된 노래보
다는, 정신적 풍성함이 담겨있는 노래가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창조와 규제개혁 힘파로 새로운 성장을 위한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다가, 금
년은 경제개혁을 위한 마지막 끝단타임이라는 강공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개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우리의 기업들 또한 좀처럼 혁신과 생산성을 크
게 개선시키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시시비비에서 나만의 이기적 가치를 내려놓고 공익의 가치를 따를 수 있는 양보와 중용의
용기와 겸양의 인격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또한 항상 습관적으로 살아온 일상이
옳은 거라는 판단 때문에 그냥그렇게 장승처럼 無(무) 생각으로 서있는 것이 아닐까요?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시간에 의해 많은 것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데 이 변
화를 느끼거나 수용하지 못하고 허수아비 모습으로 그저 그렇게 이것이 진실이라고 생각
하고 버티고 서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일입니다.

올해는 우리협회가 창립 3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사람의 나이 30이면 이립(而立)이라 인생의 기초를 세우는 나이라 합니다.

전문건설인 여러분!

올해도 창조경제라는 변화에 화두를 지니고, 온순하고 순결한 동물로 무리지어 다니는 양
의 상징처럼, 용화로 하나 되고 협동으로 和氣致祥(화기치상)의 뜻 깊은 한해를 만들어 가
도록 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한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02

권두사 MESSAGE

“부산지역 건설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발전에 공헌해 온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창립 30주년 맞아 '소통공간' 코스카레터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이헌승 국회의원

그간 전문건설업은 지역의 경제성장과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뚜렷한 족적을 남겼으며, 세계 곳곳의 건설현장에서도 국가기간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묵묵히 다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 국내SOC산업의 위축, 지속적인 부동산 경기침체 등 건설산업의 위기와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로 인해, 전문건설업계가 헤쳐나아가 할 과제가 산적해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민관의 상생발전차원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용대상 확대, 소규모 복합공사 적용범위 확대 등 법과 제도의 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꾸준히 이어져왔습니다.

이는 전문건설인 여러분들이 눈앞의 난관에 굴하지 않고 지자체를 비롯한 정부기관과 관련 건설업계 간 상생 협력의 분위기 속에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새해에도 경기침체와 양극화 심화로 우리 경제가 많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지만 전문건설업계는 위기 속에서도 차분히 내실을 다져왔기에 더 큰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따라서, 지금 이순간은 건설경제의 위기와 한파를 이겨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기이기도 하지만 장차 전문건설업의 번영을 위해 기틀을 다져 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국회에서도 제가 몸담고 있는 국토교통위를 주축으로 하여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항상 귀담아들으며 지역전문건설업체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는 한편, 지역건설업체들이 활발하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귀 협회에서도 전문건설업계의 백년대계를 준비한다는 각오로 해외건설시장 개척 등 미래를 담보할 신성장동력 발굴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산지역 전문건설인들의 '소통 공간' 이 될 코스카레터의 발전과 전문건설인 여러분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3

Special 01
+ 부산시회 자문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위촉 안내

대한전문건설협회 _ 코스카레터

부산시회 자문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위촉 안내

부산시회에서는 건설업 관련 전문지식을 가지고 건설분야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를 자문으로 위촉하였으므로,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법률·세무·노무문제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상담 및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번	위촉분야 및 성명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1	이윤근 변호사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13 시티빌딩 2층	051-507-9007
	하기남 변호사	창원 마산합포구 한월동 7길 37	055-248-2882
2	한범규 회계사	부산 강서구 명지오션시티 4로 81 세정프라자 302호	051-831-0291
3	여찬모 노무사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93 시청역롯데골드루즈 711호	051-866-0052



협회 소식

❖ 발로 뛰는 열정의 이모저모

회원사 일거리 창출을 위한 협회 대외활동

부산시회는 회원사 일거리 창출을 위하여 부산지역 주요발주기관 및 언론사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확대와 소규모 복합공사 전문공사 발주, 대형건설공사 현장(에코델타시티, 동부산관광단지, 해운대관광리조트 LCT 등)에 대한 지역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 등을 건의하고 관계자들과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10.7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간담회



10.14 중앙 1군업체 간담회



10.20 부산일보 간부 오찬 간담회



10.27 부산시의회 이해동 의장 간담회



10.30 부산지역 규제개선 간담회



11.1 이현승 국회의원 간담회



11.20 부산시의회 이해동 의장 및 창조도시교통위원 간담회



11.25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산하 교육지원청 시설과장 간담회



11.26 건설공사 품의 현실화 T/F팀 간담회



12.5 부산광역시 백선기 해운대구청장 간담회



12.5 부산광역시 노기태 강서구청장 간담회



12.5 KNN 방송사 김석환 사장 간담회



12.12 부산광역시 김영현 상수도사업본부장 간담회

협회 소식

❖ 제회의

회장단 회의

부산시회에서는 10월 13일과 12월 3일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부산시회 자문번호서 및 자문회계사 위촉, 2014회계연도 예산 집행현황, 연말연시 주요일정 및 회야행사 개최 계획 등에 대하여 협의했다.



운영위원회의

부산시회는 11월 4일(15:00 / 전문건설회관 4층 회의실) 운영위원 및 회원감사가 참석한 가운데 '2014회계연도 제3차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 1군 종합건설업체 및 주요 발주 기관과의 간담회 개최 결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중앙회 제30회 정기총회 포상대상자 및 2014년 자랑스런 건설인상 표창대상자 추천의 건을 의결하였다. 또한, 사회공헌활동사업으로 추진중인 연탄배달 봉사활동, 사랑나눔 음악회 개최관련 협조사항 및 협회 주요 담면현안 등을 협의하였다.

사회적책임경영위원회의 발대식

부산시회 사회적책임경영위원회는 나눔, 봉사, 공동번영이라는 가치를 선도적으로 실천하여 전문건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 및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기업인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윤리를 실천하여 미래를 위한 올바른 가치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 11월 5일(11:00 / 골든뷰부페)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조직 제정, 사랑의 연탄기금 지정기탁 현황 등을 보고하고, 2014년 연회비를 결정하였으며 하반기 사회공헌활동 추진 계획 등을 협의하였다.



사회적책임경영위원회의 임원 회의

부산시회 사회적책임경영위원회에서는 11월 28일(10:30 / 전문건설회관 4층 회의실) 각 분과별 부위원장 및 감사가 참여한 가운데 임원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적책임경영에 대한 인식변화 제고를 위한 워크숍 개최 및 캠페인 아이디어 제작 기증사업 계획을 협의하는 등 위원들이 남부한 연회비가 취지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나눔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협회 소식

임원 연석회의

부산시회는 12월 17일(11:30 / 송죽일식집 2층 회의실) 임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원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김병철 회장은 "세월호 사건 등으로 어려운 한해를 보내면서도 지역 전문건설업계의 권익신장과 업역보호를 위해 관계기관장 등을 만나며 바쁜 한해를 보냈다"며 "2015년은 새로운 비전으로 사명감을 갖고 변화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 승승장구하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는 인사말을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와 연말연시 주요 일정을 협의하는 등 협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 등을 교환했다.



강습회

2014년도 전문건설업 실적신고 강습회 및 노동관계법령 강습회

부산시회는 12월 19일(14:00 / 부산시민회관 1층 대강당) 회원사 임·직원 9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 및 노동관계법령 강습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강습회에서는 2014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 유의사항, 실적신고서 작성방법 및 프로그램 설치·사용방법과 더불어 부실업체 조기경보 시스템 시행 등에 따른 공지사항 안내와 전문건설업 노무관리 실무, 일용근로자 근로계약서작성 및 퇴직금 정산 등(강사 : 여찬모 자문노무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다.

회원소식

부산전문건설인 단합산행

부산시회는 11월 14일 회원사의 단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역사밭과 진달래군락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경남 창녕의 진산 '화왕산'으로 부산전문건설인 2014년 제3차 산행을 실시하였다. 이번 산행은 옥천매표소에서 시작하여 옥천계곡, 약 5만평의 역사군락지가 펼쳐져 장관을 이룬 동문을 따라 일주하는 코스로 산행에 참가한 회원사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만발하였고, 늦가을의 정취를 느끼면서 회원사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협회 발전을 위한 단합의장을 마련하는 뜻깊은 산행이 되었다. * 산악회 가입신청 ☎ 051-633-0260 이경호 총무



전건회

<전건회 회장배 국내(제주도) 원정 경기>

부산시회 회원사로 구성되어 있는 전건회(전문건설골프회)에서는 11월 23일(월)~24일(월) 제주(크라운컨트리클럽, 세인트포골프앤리조트) 회원 4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도 전건회 회장배 국내원정경기"를 개최하였다. 이날 경기행사에서 김병철 회장은 골프경기 결과에 따른 우승(주)원산토건 대표 전병우, 준우승(주)보광 대표 윤영갑, 3위(주)간양산업 대표 정중원 등 참가한 모든 회원에 부상을 전달하였으며, 회원사간의 친목도모와 전문건설업의 발전을 위한 의논 및 정보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 전건회 가입신청 ☎ 051-633-0260 박경남 간사

<12월 정기월례회 및 정기총회>

전건회(전문건설골프회)에서는 12월 26일(금) 베이사이드 골프클럽 및 클럽하우스 회원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도 12월 정기월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경기행사에서 김병철 회장은 골프경기 결과에 따른 우승(주)세광 대표 엄세현, 준우승(수영석재산업(주) 대표 문기찬), 3위(주)금호지질 대표 허성하, 행운상(주)원석조경 대표 정성태, (주)금원건설 대표 정영근, (주)성남그랜드사시 대표 장성국, 경남중합조경 대표 송유경, (주)제일공사 대표 박수근, 개근상(주)이화기술단 대표 이봉재, (주)이화중합건설 대표 광영길 등 회원에 부상을 전달하였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회원사의 적극적인 참여활동과 다수가 결정하는 사항에 대해 공평하고 합리적인 회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 및 운영방법을 추가 개정하였다.



협회 소식

2014년 부산광역시 자랑스러운 건설인상 수상자

부산광역시는 지역건설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건설업체와 건설인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해 '자랑스러운 건설인상'을 수여하고 있으며, 2014년 자랑스러운 건설인상 수상자는 영빈건설(주) 김재진 대표이사, (주)성신창업 김홍수 대표이사, (주)건양산업 정종원 대표이사, 새벽건설(주) 김장수 대표이사, 우수 건설인으로 전지개발(주) 서운태 차장, (주)산성사 김용근 부장이 선정되었다. 2015년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신년인사회(2015. 1. 9)에서 감병철 회장이 부산광역시장을 대신해 상패를 전달하였다.



〈자랑스러운 건설인상〉



〈자랑스러운 건설기능인상〉

❖ 전문건설 RMC 위원회 사회공헌활동

사랑의 연탄기금 전달 및 연탄배달 봉사활동

부산시회는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자 자율적으로 사회적책임 경영위원회(RMC, 위원장 최상대)를 구성하고 그 첫 사업으로 '지역 사회 사랑나눔'을 실천하고자 10월 22일 연탄 10,000장을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과에 전달했다. 또한 11월 5일, 부산시에 기탁한 연탄 10,000장 중 일부를 부산연탄은행과 연계하여 회원사 임·직원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 독거노인과 불우이웃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범일동소재 매축지마를 가정에 직접 연탄을 배달하는 봉사활동을 가졌다. 부산사회 회원사들이 어려운 건설환경 속에서도 기업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하는 사례는 건설업계에서 보기 드문 새로운 시도로 지역사회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등 지속적인 나눔사업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 RMC위원회(사회적 책임봉사위원회) 가입신청 ☎ 051-633-0260 김영해 간사



〈연탄기금 전달〉



〈연탄배달 봉사활동〉



협회 소식

2014 사랑나눔음악회

부산시회는 11월 6일(19:30 / 영화의전당 하늘공연장)에서 전문건설인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사회 공헌사업의 일환으로 부산의 유일한 국제구호단체인 (사)한끼의식사기금과 함께 「사랑나눔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랑나눔 음악회에는 부산지역 1,600여 전문건설인의 대외의상 제고를 위해 부산지역 발주기관 주요인사와 회원사 가족 및 임·직원을 초청하였으며,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제7회 교육메세나탑 수상

부산시회는 12월 23일(15:00 / 부산상공회의소 2층 상의홀) 부산광역시 교육청이 주관하여 개최하는 '제7회 교육메세나탑 시상식'에서 부산교육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교육메세나패를 수상했다. 부산시회에서는 질높은 명품 부산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자기주도적 학습실 구축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기부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기부활동을 통해 협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



2014년 이웃돕기 성금 모금 결과

부산시회에서는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곳에 회원사 모두의 온정을 전하고자 11월 27일부터 한달간 이웃돕기 성금모금을 실시했다. 그 결과, 122개 회원사가 참여하여 1,825만원이 모금되었으며 모금된 성금은 취약계층(아동 등) 생계 및 주거환경 지원기관 등에 기탁할 계획이다.

<이웃돕기 성금모금 참여 회원사>

(주)에이비엠그린텍 대표이사 김병철, 새벽건설(주) 대표이사 김정수, (주)엠지건설 대표이사 유창태, (주)일창건설 대표이사 정화근, (주)공간조경 대표이사 정석봉, (주)대양산업건설 대표이사 김진형, 동림건설(주) 대표이사 최문학, (주)세원이엔지 대표이사 김세원, 영민건설(주) 대표이사 김재진, 지산특수토건(주) 대표이사 김형경, 김명문, 천지개발(주) 대표이사 임철규, (주)홍산건설산업 대표이사 강영호, 무성토건(주) 대표이사 김중환, 미방회(미방방수조적분과회), 삼지건설(주) 대표이사 이태원, (주)성덕건설 대표이사 김경식, 대저조경 대표 이윤수, 디에이치테크(주) 대표이사 황소용, (주)수진건설 대표이사 김상욱, (주)우성엔지니어링개발 대표이사 최상대, 유창중건설 대표 김영주, (주)인산산업 대표이사 하진근, 토암건설(주) 대표이사 남기태, 하진토건(주) 대표이사 하정현, (주)호생활경 대표이자 황준, (주)리인그룹 대표이사 김원봉, (주)거림디엔씨 대표이사 박필재, 진효영, 경남종합조경 대표 송유경, (주)금호지질 대표이사 허성하, 남우건설(주) 대표이사 하익수, 대성산업종합환경 대표이사 박성윤, (주)대신산업개발 대표이사 박성열, (주)대한그린에너지 대표이사 박근식, (주)동명도장 대표이사 안형필, 동신창호 대표 이기호, 동우기업 대표 최원욱, (주)라이프하우징 대표이사 이형민, 명작건설(주) 대표이사 박정규, (주)복민건설 대표이사 황규진, (주)사오건설 대표이사 오태진, 사직건설(주) 대표이사 배병윤, 석봉건설(주) 대표이사 한상호, 소원건설(주) 대표이사 최기향, 신우개발 대표 김문곤, 아후건설(주) 대표이사 김병홍, 에스엔케이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김장우, (주)에이탑이엔지 대표이사 정진철, (주)연동 대표이사 반백철, 옥산건설(주) 대표이사 유재봉, (주)용광사 대표이사 김원호, (주)원산토건 대표이사 전병우, (주)원석조경 대표이사 정성태, (주)원지조경 대표이사 김선력, (주)원성기업 대표이사 천상우, (주)주일건설 대표이사 박강일, 중앙건설(주) 대표이사 민환기, 태영건설(주) 대표이사 박범용, (주)통영산업건설 대표이사 강재준, 한국라이텍개발(주) 대표이사 황성도, (주)한일개발 대표이사 이종철, 한일금속공업사 대표 주병규, (주)해금인터리어 대표

이사 김신행, 해진건설(주) 대표이사 이상호, (주)현성건설 대표이사 이재근, (주)화성건설 대표이사 변용규, (주)홍림건설 대표이사 강갑근, (주)건양산업 대표이사 정종원, 건진개발(주) 대표이사 심수물, 경북개발(주) 대표이사 임복근, 고려토건(주) 대표이사 이미영, 광민건설(주) 대표이사 최형선, (주)구룡산전 대표이사 허항용, (주)국일에스앤에프 대표이사 이기덕, (주)그리아이디 대표이사 정인수, (주)광이엔지 대표이사 오동진, (주)금양이엔지 대표이사 정희선, (주)금원건설 대표이사 정영근, (주)금정토건 대표이사 문준식, (주)금하수도 대표이사 김은주, (주)남경석재 대표이사 김봉식, (주)대봉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이상원, (주)대오건설산업 대표이사 신봉수, (주)대정이엔씨 대표이사 김미진, 덕인인젝트 대표 이항영, (주)동아피앤씨 대표이사 홍종욱, (주)동영에스씨 대표이사 방성원, 두통개발(주) 대표이사 허승규, (주)미다스건설 대표이사 최정숙, 이종민, (주)미래건축디자인 대표이사 김형근, 민성건설(주) 대표이사 서영철, (주)부근건설 대표이사 신중근, 부영건설(주) 대표이사 김용석, 부영기업(주) 대표이사 김용석, (주)빅인테리어 대표이사 김상열, 산양건설(주) 대표이사 정진갑, (주)삼강기업 대표이사 김정식, (주)삼광건설 대표이사 김기배, 새벽물류(주) 대표이사 정진상, 서연건설(주) 대표이사 황경숙, (주)성신산업 대표이사 김홍수, 수영석재산업(주) 대표이사 문기찬, 신기개발(주) 대표이사 박순보, 신흥건설(주) 대표이사 정길찬, (주)아이투디자인 대표이사 김종철, (주)에스지디자인 대표이사 김채용, (주)에맥 대표이사 김정환, (주)우리건설산업 대표이사 정용덕, (주)원창이엔씨 대표이사 심상철, (주)원태건설 대표이사 지미선, (주)유건일미노 대표이사 전인주, 장원엔지니어링 대표 백이승, (주)청산산업 대표이사 강성규, 평화지오테크(주) 대표이사 박종욱, 한국올타리공업(주) 대표이사 정승도, 한울솔리베이터(주) 대표이사 정현호, (주)한수유니텍 대표이사 손영규, (주)세신석재 대표이사 조영철, (주)현대금속 대표이사 이종덕, 호재환경산업(주) 대표이사 이호경, 화성포장건설(주) 대표이사 노대환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제도

-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항 및 시행령 제64조의3, 시행규칙 제34조의4 (2013. 6. 19 시행)
- 도입배경** : 건설업자의 경영악화, 부도 등으로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사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건설기계업자 보호를 위해 도입
- 보증대상**
 - 가. 원하수급인이 건설기계대여업자와 체결한 건설기계 임대계약
 - 나. 건설업자는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의무(면제대상 공사 제외)
 - ※ 면제대상 : ① 발주자, 원·하도급자, 장비업자가 장비대금을 직불하기로 합의한 경우, ② 200만원 미만의 소액계약인 경우
- 보증금액** : 지급보증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체불이 발생한 금액으로서 최대 4개월분 보장
 - 가. 대여기간이 4월 이하 보증금액 : 계약금액 - 선급금
 - 나. 대여기간이 4월 초과 보증금액 : (계약금 - 선급금)/계약 공사월수 × 4월
 - ※ 건설업자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 대여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이행보증서를 요구할 수 있음.
- 보증기간** : 건설기계 대여일부터 계약 이행기일까지
- 위반자에 대한 제재** : 보증서 미발급시 시정명령, 6개월 이하 영업정지 또는 1억원이하 과징금 부과(건설법 제81조 및 제 82조)
- 발급수수료 공사원가 반영 및 정산**
 - 가.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은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에 기재된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

나. 발주자는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수급인(원사업자) 또는 하수급인(수급사업자)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을 정산할 수 있음.

8. 최근 동향 및 진행사항

- 가. 국토교통부는 소속·산하기관, 각 발주기관 등 건설기계 보증 수수료 원가반영,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확인, 건설기계 대금지급 및 보증여부 확인을 철저하게 할 것을 요망
- 나.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계약 신고App」이용 활성화와 범위안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등 추진중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건설업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임대 계약 체결 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를 작성(서명날인)·상호 교부 후 이를 보관하여야 함.

※ 근거 :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의무적 명시 내용

대여 건설기계 및 공사현장, 건설기계 1일의 가동시간, 임대료지급의 시기·방법 및 금액, 건설기계의 운반경비 및 그 부담자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지나 천재·지변의 경우 발생되는 손해의 부담, 분쟁발생시 분쟁의 해결 방법에 관한 사항

■ 위반시 제재사항

- 과태료(1차 : 200만원, 2차 : 250만원, 3차 : 300만원) 부과



인터넷 제증명 발급 서비스 개선

우리협회에서는 2015. 1. 5.부터 회원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협회 전산시스템이 구축된 98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자료부터 공휴일 포함한 24시간 인터넷 증명발급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함

인터넷 증명발급 서비스 확대

구분	현행	변경후
발급시간	평일 09시 ~ 17시30분	24시간(공휴일포함)
발급기간	최근 5년간	98년 실적신고자료부터

* 시행일 : 2015. 1. 5



건설기술자의 경력 등 한국건설 기술인협회 신고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록된 건설기술자만 건설업등록기준 인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건설업 등록기준 개정 (대통령령 제2527호, 2014. 11. 14.)

- 기술능력 중 건설기술자는 해당분야 초급이상으로 명확화

건설관련 국가기술 자격 취득자(기술사, 기사, 산업기사)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경력 등을 신고하여 등급초·중·고·특급을 받지 않은 경우 건설업 등록 기준상 기술능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건설공사 수주지원 및 제도개선사업

❖ 2014년 주계약자 공동도급 전국 최다 발주

부산지역 102건 발주, 전국 1위 성과달성

부산시회는 2014년 한해동안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부산지역 발주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워크숍 및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방문과 건의로 동 제도 정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부산광역시에서는 2014년부터 부산광역시의 예산이 지원되는 건설공사의 경우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를 의무화 하고, 부득이하게 동 제도로 발주가 불가능할 경우에 「부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하는 「부산광역시 회계·계약분야 개선계획」을 수립, 제도화 하여 시행해 왔다.

이러한 부산광역시의 노력과 부산시 산하 구·군청 및 본부, 공사·공단, 교육청 등 부산지역의 주요발주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2014년도에 부산지역에서 102건(부계약자 300여억원)이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되어 전국 시·도 중 최다의 발주실적을 달성하였으며, 타 시·도에서는 부산지역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시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건전한 건설산업 생산환경을 조성하는 시너지효과로 작용하고 있다.

부산시회는 2015년도에도 부산지역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확대와 에코델타시티, 동부산관광단지, 해운대 관광리조트 등 대형건설현장에 대한 지역업체 하도급참여 확대, 소규모 복합공사 전문공사 발주 등 회원사의 일감확보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생활권 수목병해충 방제사업 조경식재공사 발주 건의

발주기관에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송부

부산시회는 지난 10월 22일 부산지역 주요 발주기관에 약제살포 및 전정작업 등 조경수목 관리와 수목병해충 방제공사(방제사업)는 조경식재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한다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질의회신[건경58070-132(2001.2.7), 건설경제과-5394(2014.9.23.)]을 안내하고 수목병해충 방제공사(방제사업) 발주시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조경식재공사업도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여 불필요한 업무분장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건설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부산지역 주요 발주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조경식재 공사설계시 유지관리비 별도 계상 건의

부산시회는 10월 2일 부산지역 113개 주요발주기관을 대상으로 조경식재공사 발주시 부산광역시 설계지침서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지관리비를 내역서에 반영하고, 시공 중 발생하는 병해, 한해, 수해 등 기후적 요인 및 현장 여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 부산지역 대형 건설현장 하도급 실태점검 실시

부산광역시와 합동으로 지역업체 하도급참여율 및 부당특약 설정 점검

부산시회는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에 걸쳐 부산광역시와 합동으로 지역 내 5개 대형 민간공사 현장을 방문, 건설부조리 및 종합건설업체의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 결과 2014년 8월 말경 공공공사를 조사했던 평균 지역업체 하도급율 91.27% 결과보다 금번에 조사한 민간공사의 경우는 54%로 낮게 조사되었을 뿐만아니라 2개의 민간건설공사 현장은 30% 미만으로 조사되어 시행사 및 원도급업체 현장소장 등에게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 하도급참여에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부산시회는 또 이번 실태조사에서 일부 종합건설업체가 하도급계약 체결시 산재처리 및 돌관 작업에 따른 비용을 하도급사에 전가하는 부당특약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어 이의 시정을 요청했으며 향후 투입공종에 대해서도 불법·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발주기관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요청했다.

❖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 상정안건 건의

부산광역시 하도급 관리팀 상시 운영, 조경식재공사 설계시 유지관리비용 의무적 반영

부산시회는 12월 4일(14:00 / 부산광역시청 7층 회의실)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의에 참석해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근절과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해 하도급관리팀을 신설하고, 조경식재공사 설계시 유지관리비용을 의무적으로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부산시회는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참여 확대야말로 지역생산자재와 장비사용으로 지역 자재·장비업체의 동반성장과 근로자 고용창출로 부산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가 있으며, 또한 조경식재공사의 유지관리비를 공사원가에 반영하지 않음으로 인해 준공 이후 발주기관의 관리 부주의로 수목이 고사하는 경우까지 이를 하자로 보아 조경식재공사업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조경식재공사업체의 경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므로 조경식재공사의 유지관리비용을 설계내역서에 의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는 부산시회의 건의를 수용·의결 하였으며, 하도급관리팀은 건설정책과 하도급 실태조사 계획 수립시 이를 반영하고, 조경식재공사의 유지관리비용은 부산광역시 녹지공원과 협의하여 조경공사 설계지침서 등의 개선을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건설공사 수주지원 및 제도개선사업

❖ 3억원 미만의 복합공사 전문공사 발주 및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확대 건의

회원사 건설공사 일거리 창출을 위해...

부산시회는 11월 7일 회원사의 건설공사 수주확대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부산광역시 및 부산지역 80개 주요발주기관을 대상으로 공사에정금액 3억원 미만으로서 2종류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건설공사라 하더라도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공사는 해당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전문건설업자에게 발주하고,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종합공사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하여 줄 것을 협조요청 했다.

❖ 시설물 보수·보강공사 전문공사 발주 건의

단일 전문건설업종에 해당되는 개량·보수·보강공사
해당 전문건설업으로 발주를...

부산시회는 11월 7일 부산광역시 및 부산지역 69개 주요발주기관을 대상으로 시설물 보수·보강공사 발주시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발주하여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제2항에서는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7조 관련 별표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 비교8.에서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자는 완성된 시설물 중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복구·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최근 일부 발주기관에서 교량, 터널, 하수박스 등의 시설물 보수공사의 경우 단일 전문건설업종에 해당되는 개량·보수·보강공사 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수·보강공사라는 이유만으로 전문건설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발주하고 있어 이의 시정을 건의한 것이다.

❖ 전문공사 발주시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업역준수 건의

부산지역 종합사회복지관에 건설공사 업역준수 건의

부산시회는 11월 7일 부산지역 종합사회복지관 53곳을 대상으로 전문공사 발주시 일부 발주기관에서 실내 리모델링공사, 화장실 개·보수 공사, 천정교체공사, 외벽도장 및 옥상 방수공사 등 시설물의 보수·개량공사를 단순히 2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발주하고 있어, 불필요한 업역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규정되어 있는 업무영역을 준수하여 줄 것을 협조요청 하고 건설업자 선정기준 및 건설관련 제도 등이 수록된 책자를 함께 송부했다.

❖ 도시정비사업에 지역전문건설업체 참여방안 마련 건의

202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개정 건의

부산시회는 11월 18일 부산지역 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에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에 따른 움직임을 인센티브 부여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202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개정하여 줄 것을 부산광역시에 건의하였다.
부산시회는 그 동안 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에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종합건설업체가 부산지역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에 부산지역 종합건설업체와 공동도급 참여시에는 움직임을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 반면,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에 따른 움직임을 인센티브 부여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부산지역에서 시행되는 민간건설공사에 지역 전문건설업체 참여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부산지역 도시정비사업에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에 따른 움직임을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마련될 수 있도록 건의한 것이다.

❖ 건설업 무등록시공 근절

부산시회에서는 11월 27일 건설부조리 근절의 일환으로 전문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고 인터넷 등을 통해 무분별한 광고를 게재한 후 실내인테리어 및 리모델링, 방수, 도장공사 등을 도급받아 시공하는 부산지역 330여개 건설업 무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전문건설업을 등록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건설업 무등록 시공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으므로 전문건설업을 등록 후 시공하여 줄 것을 안내했다.

또한, 부산지역 150세대 이상 660여 아파트 관리사무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산광역시지부 및 각 구·군사회, 의료·미용 관련 단체, 부산지역 주요 대학교에도 동 내용을 안내하여 실내 인테리어 공사, 방수공사, 도장공사 등을 시공할 경우 해당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업체에게 시공계 함으로써 건전한 건설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협조했다.

❖ 2016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 희망항목 조사

현행 품셈의 불합리한 항목, 신설·개정 필요한 항목 조사

정부는 매년 상·하반기 2회(7, 12월)에 걸쳐 그동안의 설계 및 시방기준의 변화와 일반화된 공법중공사비 산출기준이 없는 항목을 발굴, 표준품셈을 개정해 발표하고 있으며, 표준품셈 개정은 현행 품셈에서 불합리한 항목이나 신설이 필요한 항목을 발굴하여 현장 실사를 통해 품을 도출하고, 표준품셈 심의위원회(한국건설기술연구원)를 거쳐 최종 개정·확정된다.

한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2016년도에 적용할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대한 개정 희망항목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에 부산시회는 현행 표준품셈 중 불합리한 항목, 신설·개정이 필요한 항목을 발굴하기 위해 회원사에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안내했으며, 향후 회원사에서 제출된 의견을 토대로 건설공사 품의 하락을 방지하고, 현실적인 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표준품셈의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건설공사 수주지원 및 제도개선사업

❖ 2015년 부산지역 공공공사 시행계획 자료 수집

부산시회는 12월 3일 부산광역시 및 16개 구·군청,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교육지원청, 공사·공단 등에 2015년도 시행예정인 건설공사 발주계획을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했으며, 향후 수집된 발주계획정보는 발주기관별로 분류하여 부산시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회원사에서 건설공사 수주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 2015년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서 개정 건의

1일 작업량 미만의 소규모 공사 품의 할증 적용 등

부산시회는 12월 8일 1일 작업량(8시간) 미만의 소규모 공사에 대한 품의 할증을 적용하고,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할 경우 발주자가 실제 교부 여부를 점검하는 등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서를 개정하여 줄 것을 부산광역시에 건의했으며, 주요 건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소규모 공사 설계시 지세별·지형별 현장 여건 및 작업조건 등을 고려하여 품의 할증을 반영
- △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할 경우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이행을 점검
- △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지급시 발주자는 공사금액의 조정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
- △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의 재생아스콘 의무 사용 비율을 5회에서 3할로 축소

❖ 현장 여건을 고려한 품의 할증 반영 건의

건설공사 설계시 품의 할증 제대로 반영해 줄 것

부산시회는 12월 8일 부산지역 76개 주요발주기관에 회원사의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하여 건설공사 예정가격 작성시 최신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서를 적용하고, 지세별·지형별 공사 현장여건 및 작업조건을 고려하여 품의 할증을 반영해 줄 것을 협조 요청 했다.

지속되는 건설경기 침체 속에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은 건설공사 수주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발주기관에서는 공사현장의 여건, 난이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 범위 내에서 최저단가로 설계를 하거나, 예산 절감을 위한 설계 누락, 품의 할증 미적용, 소규모 공사에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여 공사를 발주 함으로써 전문건설업체들의 기업경영상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에 부산시회에서는 부산지역 중·소 전문건설업체들의 보호·육성을 위해 실행단계 이하의 저가하도급을 근절하고, 적정공사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공사 현장여건 및 작업조건을 고려하여 건설공사 설계시 적정 단가 및 품의 할증을 반영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더불어 건설공사 입찰참여 전 설계서, 산출내역서, 공사시방서 등을 사전 열람하고 면밀히 검토한 후 투찰하여 자가 수주로 사전에 예방하고, 적정공사비 미확보, 적자시공 등을 이유로 공사계약을 포기하여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금을 배상하는 등 부정부당 제재 처분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줄 것을 회원사에 안내했다.

❖ 재해복구공사 해당 전문공사 발주 협조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협조 요청

부산시회는 12월 15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을 방문하여 2종 이상의 단순한 전문공사가 복합된 재해복구공사의 경우 실시공자인 전문건설업체가 동 공사를 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전문공사로 발주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청에서는 최근 재해복구 공사 발주시 공사에정금액이 3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로서 단순한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되거나 주된 전문공사 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 이상의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종합건설 토목공사업 등으로 발주하고 도급받은 종합건설업체가 또다시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하고 있는 실정임으로 종합과 전문의 균형적인 발전과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 예방 및 다단계하도급 근절을 위해서라도 주된 전문공사로 발주하여 줄 것을 건의한 것이다.

❖ 전문건설공제조합의 하자여부 확인·심사 철저 건의

부산시회는 12월 24일 중앙회를 경유하여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발주자 또는 종합건설업체의 하자보증 요청시 하자여부에 대한 세밀한 심사 후 하자임이 명백히 밝혀졌을 때 하자보증금 지급하고, 발주자 또는 종합건설업체가 지급하는 자재(레이콘 및 철근 등)로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시공한 경우 크랙 등은 하지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최근 철근·콘크리트공사의 경우 발주자 또는 종합건설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자재로 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 준공 후 지급지체의 결함 및 단순한 사용연한 경과로 인한 크랙발생까지 전문건설업체에게 책임을 물어 하자요청과 함께 전문건설공제조합에 하자보증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으며,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는 발주자 또는 종합건설업체가 하자보증금을 청구할 경우 하자여부에 대한 세밀한 조사없이 하자보증금을 지급함에 따라 이후 보증서를 교부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출자해야 하는 등 전문건설업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4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 접수 및 2015년도 시공능력평가 안내

2014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 접수

• 부산시회는 2014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를 2015. 1. 20.(화)부터 2015. 2. 16.(월)까지 방문 및 인터넷(서류 제출 포함) 접수하며,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결산 재무제표증명원은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아 2015. 4. 15까지 제출(단, 개인업체 6월 1일)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법정 신고기한내에 접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4. 12. 31기준 신고업체의 건설공사실적, 재무상태, 기술능력, 대외 신인도등을 기준으로 신고하고, 실적신고 서류 제출 시 증빙서류가 정확하게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만 시공능력평가 및 입찰적격심사에 반영됩니다.

• 2014년도 전문건설공사 실적신고서 작성요령 및 실적신고 프로그램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및 실적신고 홈페이지(<http://slijuk.kosca.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실적신고 내용은 업체별 관할 세무서에 통보되어 과세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실적신고 한 내용과 세무서의 신고내용은 일치하여야 함(과세자료제출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 불법·불공정 행위(일괄하도급, 재하도급, 영업정지처분위반 계약공사, 건설업등록이전 계약공사 등)의 건설공사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할 등록관청에 행정제재 처분됨.
- 실적신고 서류의 허위제출 및 해당업종의 업무내용에 속하는 건설공사를 다른 업종으로 신고하는 경우 건설공사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허위실적신고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



2015년도 시공능력평가·공시 절차

<p>↓</p> <p>강습회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도 실적신고 강습회 : 2014. 12. 19(금) 14시
<p>↓</p> <p>프로그램설치 및 실적신고서류 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적신고서작성안내서 숙지 • 실적신고 프로그램 설치 (http://slijuk.kosca.or.kr) •설치된 프로그램에 실적신고 자료 입력 (업체현황, 건설기술자, 기성실적, 우수/해외/기술 등)
<p>↓</p> <p>실적신고 증빙서류 준비 및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적신고 증빙서류 준비 및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성실적증명서 확인(발주자 또는 원도급자) - 건설공사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세무대리인 확인필) 준비 •기술능력평가 증빙서류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술자자격증(경력증)사본 - 고용보험/국민연금/서류 등 - 기술개발투자비지출확인서 등 •신기술지정 / 우수건설업체 / ISO / 해외건설현장인력고용확인서 등
<p>↓</p> <p>신고서류 편철 및 협회 실적신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적신고 프로그램에 작성한 실적신고서류 출력 및 편철 •각종 증빙서류 첨부 •제출서류 및 미비서류 유무 확인, 납부 할 회비 확인 •협회 실적신고(2015년 2월 16일까지) 및 회비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신고 시 제출서류 : 우편발송 2015년 2월 16일 도착 분까지 유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제표 : 2015년 4월 15일 (단, 개인업체는 2015년6월1일까지)
<p>↓</p> <p>시공능력평가액 산정작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적확인서 및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적확인서(실적확인서, 총괄표, 내역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건설업종(기계설비, 시설물, 가스시설시공업 제외) : 2015년 7월 1일부터 -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 2015년 7월 1일부터
<p>↓</p> <p>2015년도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자료 확인(협회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시공능력평가액 공시 : 2015년 7월 31일(공시방법 : 협회 정보통신망) •시공능력평가액 기재 : 2015년 8월 31일(월)부터

겨울철, 건강관리

겨울철 건강관리법엔 무엇이 있을까요?

겨울은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 만큼 몸의 온도변화도 심해지기 때문에 독감, 감기, 천식들을 포함한 호흡기질환과 병관길, 눈으로 인한 사건사고 또는 갑작스런 기온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뇌졸중과 겨울철 우울증까지 급증한다고 합니다.

계절이 바뀐다고 하여 건강관리의 큰 원칙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 휴식 그리고 충분한 영양소 섭취까지 위생관리는 1년 내내 바뀌지 않는 건강관리의 기본이지만, 계절이 바뀐다는 것은 환경변화에 우리도 조금은 변화주어 환경에 적응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럼, 기본적인 건강관리와 더욱 더 건강해지기 위한 겨울철 건강관리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하루 8잔 이상의 충분한 수분을 섭취할것.

겨울철에는 실내에서 히터를 향시틀어놓기에 수분이 항상 부족하다. 몸속의 수분을 유지시킬수 있도록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섭취하는것을 권장한다. 또한 커피, 탄산음료 등은 수분을 빼앗는성질이 있기 때문에 물대용으로 음용하는것은 좋지 않다.

2. 손 씻기로 청결을 유지한다

건강관리법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손씻기이다. 감염성 질환은 주로 손을 통해 전염되기 때문에 평소에도 손을 올바르게 씻는 습관이 중요하다. 외출 직후에 손을 꼭 씻어야한다. 그리고 겨울에는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이 잦기에 특히 손씻기를 자주 해야한다.

3. 빨래로 가슴을, 환기를 자주하자.

겨울철은 날씨가 춥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창문을 여는 횟수가 줄어든다. 그러므로 실내의 공기는 더욱 탁해져 직장 내 작업능력도 떨어진다. 그러므로 실내의 공기를 자주 환기 시켜주는 것이 건강에 좋다. 겨울철에는 두터운 겨울옷들로 인하여 보이지 않는 먼지들이 많이 있으므로 들어오기전에 옷을 털고 들어오거나 창문을 자주 여는 것이 좋다. 또한 건조한 겨울철에는 생활 빨래를 방안에 넣어 가슴을 하는 것이 좋다.

4. 피부보습 철저하기

겨울철 외부에서는 칼바람과 낮은온도, 그리고 내부에서는 온열기로 높은온도나 뜨거운바람으로 건조해져 피부의 수분을 앗아가 피부건조증이 생기기 쉬운 계절이다. 피부건조증을 예방하는 방법은 하루2번 환기를 하여 곰팡이와 먼지를 제거하고, 잦은샤워보다는 목욕을 하는것이 좋다. 또한 건조함이 심한 손이나 발은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갈라지지 않도록 한다.

5. 미끄럼 방지 신발신기

눈이오는 겨울철은 미끄럼 방지 신발을 신어 빙판길 사고를 예방하는것이 좋다. 빙판길 사고는 뇌진탕, 골절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주의해야한다.

6. 가벼운 운동을 한다

날씨가 추워 움직임이 적어지는 겨울은 활동량이 적어지는 계절이다. 체중이 증가하기 쉽고 면역력이 떨어져 가벼운 질병에도 노출되기 쉽다. 그렇기때문에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가볍게 달리기, 스트레칭, 실내 자전거타기, 요가 등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여야 겨울철 건강을 지킬 수 있다.

7. 제철음식으로 건강한 식단

활동량과 운동량이 줄어드는 겨울엔 과식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운동량이 줄어드는 계절인 만큼 식사량도 줄이고 신선한 제철 식단을 권장한다.

8. 두꺼운옷 보다는 얇은옷 겹쳐입기

겨울철 외부온도는 매우 낮지만 난방시설이 있는 실내온도는 높다. 이렇게 큰 온도의 변화는 몸이 혼란을 일으켜 쉽게 감기에 걸릴 수 있다. 두꺼운 하나를 입는것 보다는 얇은 옷을 여러겹 겹쳐입는것이 높은 온도에서나 낮은 온도에서나 적절하게 체온을 유지할수 있게 도움을 주고 겨울철 건강관리에 도움이 된다.



9. 혈액순환에 신경 쓸 것!

겨울이되면 유난히 손과 발이 차거나 몸이 잘 못난다. 그 이유는 추워진 날씨에 혈관이 유난히 수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혈액순환 장애와 같은 혈관질환이 발생하기 쉽다. 혈액순환에 좋은 음식을 자주 섭취하여 혈관수축을 방지하여야한다. 혈액순환에 좋은 음식은 양파, 생강, 단호박, 부추 등이 있다.

10. 겨울철에도 적극적인 활동으로 우울증 발생위험을 줄이자.

계절성 우울증, 특히 겨울철 우울증이 빈발한다. 특히 겨울철 우울증은 태양광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뇌와 신체는 짧아지는 일조시간에 반응에 멜라토닌을 더 생성하기 때문이다. 겨울철에 햇빛을 봐주는 것은 우울증과 함께 골다공증, 골절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하니 햇살이 비치는 시간대에 하루 한번이라도, 혹은 주말이라도 바깥 외출을 통해 햇빛을 쬐어 주는것이 좋다.

신기술 소개

RPF Beam 공법

RPF Beam은 프리플렉스 빔과 PSC 빔의 장점을 결합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된 합성형 빔이다.

RPF Beam(Represtressed Preflex Beam)은 하부플랜지 콘크리트에 적정량의 PS 강연선을 배치하여 하부플랜지 콘크리트에 압축 응력을 프리플렉스빔에 프리스트레스에 의해서도 도입하여 지금까지 공용되고 있는 프리플렉스 빔의 최대 장점인 낮은 형고를 유지하면서 경제성 및 안전성을 제고한 공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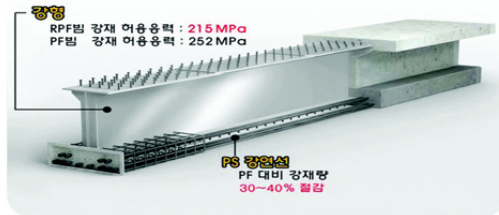


국도교통부 신기술 제77호
한국철도시설공단 신기술 2009-0046호
소방방재청 방재신기술 제6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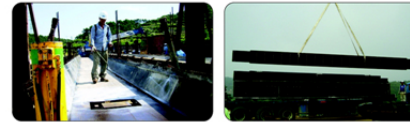


R.P.F. 동양 RPF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박문진

RPF 빔고 "→ 낮은 형고 + 공사비 저렴



주요시공사진



RPF Beam 공법의 적용성

주형 높이가 매우 적으면서 장경간(20m~55m)이 가능한 교량 형식으로 국내 공법중 교량 연장 대비 가장 낮은 형고의 공법이다.

- ◆ 형고가 작아 형하 여유고 확보가 용이하며, 도로선형 계획 시 중단선형 제약조건 최소화 가능하다.
- ◆ 입체교차로, 도심지 등 형고에 제약이 있는 지역에 적합하며, 중단선형을 낮게 함으로 인한 토공비 및 용지보상비를 절감할 수 있다.
- ◆ 최근 수해 등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하천 통과 교량에서 최대 홍수위 상수에 따른 형하 여유고 및 통수단면 확보가 용이하여 접촉도로 저축을 최소화할 수 있다.
- ◆ 단지계획과 조화로운 경관성이 가능하고 개방감 확보로 교량 하부공간 이용이 용이하여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로의 연속성 및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다.





(주)제일공사

대표이사 박수근

쿨한 목소리가 새어나온다.
"아~ 안한다니까!"

촬영을 위해 동행했던 대한전문건설협회의 한종석 실장과 꽤 친분이 있어 보이는 그가 처음 한 말이다. 못내 부끄럽고 속스러운 듯 "앞으소" 자리를 내어주는 그는 목소리만큼 쿨한 성격으로 인터뷰 내내 웃음이 끊이지 않게 했다.

잘 물든 단풍은 봄꽃보다 아름답다.

햇빛이 아주 작은 구멍을 통해서도 보여질 수 있듯이 사소한 일이 사람의 인격을 설명해 줄 때가 있다. 법륜 스님의 <인생수업>이라는 책의 '잘 물든 단풍은 봄꽃보다 아름답다' 라는 부제가 오늘따라 더 마음에 와 닿는다. 봄꽃보다 더 아름다운, 잘 물든 단풍을 만났기 때문이다.

우리는 누군가를 만날 때 그의 외모나 풍모에서 살아온 흔적을 발견한다. 왜소한 듯하나 탄탄해 보이는 몸집에 하얀 머리칼라. 젊었을 때 한 인물 했을 법한 그의 얼굴에서 사람 좋아하는, 그리고 사람 좋아 보이는 따뜻한 정이 묻어난다. 타고난 얼굴은 세월의 바람에 부딪혀 살아온 방식대로 새로이 조각되는 법이다.



인생은 채워가는 것.

오색등 네온불이 속삭이듯 나를 유혹하는 밤 가슴을 휘젓듯이 흐느끼는 색소폰 소리 아~ 나를 울리네. 이 순간이 지나고 나면 떠날 당시이기에 그대 품에 안기운채 젖은 눈을 감추네. 아~ 부르스! 부르스! 부르스 연주자여! 그 음악을 멈추지 말아요.

주현미 <눈물의 부르스> 中

요즘 할 일이 생겼단다. 그래서 너무나 바쁘단다. 직원들이 다 퇴근해버린 어스름 저녁이 되면 그는 골방에 틀어박혀 혼자 색소폰을 분다. 나이 들어가는 황혼을 그냥 흘려보내기 싫어서 시작한 색소폰으로 생활에 활력을 찾았다고 한다. 더불어 몸과 정신까지 건강해졌으니 일석삼조라며 색소폰 찬양을 한다. 역시 인생은 그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채워나가는 것이다. 무언가를 열심히 배우는 중년의 남자에게는 멋이 깃들여 있다.

누구나 한번은 길을 잃고, 누구나 한번은 길을 만든다.

본디 한번 흥수를 겪은 땅이 더욱 비옥해지는 법이다.

도리어 룡만 심던 밭에 팔을 심어볼 기회이기도 하니 그 흥수가 굳이 안타까울 일만도 아니다.

10년 가까이 중장비임대업을 해오던 그가 우연한 계기로 건설업에 뛰어들어 많은 어려움을 겪어낼 수 있었던 것은 오랫동안 함께 발맞춰 온 직원들의 팀웍 덕분이다. 그래서인지 직원들에게 애착이

많다고 했다.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늘 마음을 열어 두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지키고 싶은 것이 생기면 우리는 좀 더 강해진다. 강해진다 것은 그만큼 감당해야 할 것들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 때 스스로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이다. 보살피야 하는 직원들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어깨도 무거워진다. 하지만 하나씩 쌓여가는 어깨의 무게만큼 웃을 일이 더 많아진다는 박수근 사장. 한 사무실을 20년 이상 한 자리에서 지키고 있는 독심반 바도 그의 성정을 알 것 같다.

자부심. 그리고 열심.

그에게는 짜릿한 추억이 하나 있다.

2005년, SK 북한산시티(아파트16~25층 54개동 5,32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토공사와 구조물 공사를 할 때 단 한 번에 준공을 했다고 한다. 대한민국 건설업계 역사상 5,300여 세대를 한 번에 준공한 적은 전무후무하다고 말하는 그에게서 일에 대한 자부심이 온전하게 전달되어졌다. 그때 건설업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고 다시 또 그런 쾌감을 맛보고 싶다고 한다. 요즘도 그곳에 한번 가 보고 싶다면 옛 연인을 떠올리는 듯 추억에 잠기는 그의 눈가가 순간 붉어지는 듯 했다.

안전을 가장 중요시 여긴다는 그는 지금도 여전히 현장을 돌아본다. 열심히 확인하고 열심히 거둔다. 인부들의 면면을 살피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현장에서 함께 호흡하는 이유는 사람을 잃기 싫어서이다. 거친 환경인만큼 자칫 한 순간 눈을 돌리면 돌리킬 수 없는 슬픔을 겪게 되기 때문이다. 이해의 깊이와 사교의 깊이가 '차이'를 만든다.

그가 말하는 '차이'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며 돌아오는 길, 차 안에 도 호탕한 그의 웃음이 번져가는 것 같았다.

** 덧붙이는 이야기

(주)제일공사는 변화를 추구하고, 투자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건물 신축의 기초를 마련하는 시작점으로 신뢰와 정성으로 시공한다. 철저한 사전 조사와 분석에 의하여 고품격, 최첨단 시설, 양질의 자재와 하이 퀄리티의 기술력으로 경쟁력 있는 공간을 창조하는 선두주자로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KOSHA 18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대한 인증을 획득했다. 도시와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숨 쉬는 땅'을 만들기 위한 노력. 이것이 (주)제일공사의 진심이다.

10

건설인 제 4호
+ 전문건설인의 삶을 누려오면서 경험했던 실패와 좌절을 극복하고 성장한 사람들의 이야기

영빈건설(주)

대표이사 김재진



그의 집무실에 들어서 악수를 청하고 앉자마자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아빠, 나 있잖아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맑은 여자 음성.

“그래 그래, 아빠가 나중에 전화할게”

결국, 사람.

막내딸이란다.

건설업을 하시는 아버지에게 현관문을 발주(?)했는데 가격이 비싼 것 같아 더 저렴한 다른 곳으로 계약을 하겠다는 내용이였다. 섬섬하지 않느냐 물으니 ‘비용’ 앞에서 냉정하고 똑똑하게 따지는 딸이 더 기특하다고 허허 웃는다.

슬하에 딸만 셋을 둔 김재진 사장의 세 딸들은 모두 좋은 자리 마다하고 연애 결혼을 했다.

딸자식이 든든하고 좋은 신랑감을 만나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편하고 걱정 없는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당연지사. 인사를 하러온 사윗감 후보들이 셋 다 마음에 들지 않아서 반대를 했지만 지금은 딸들의 안목에 감탄을 한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뉘림이를 보고 자란 딸들의 사람 볼 줄 아는 눈 덕분인지 제대로 ‘사람 된’, 사위들을 맞았다고 수줍게 자랑을 한다.

첫째 사위에게는 무한한 신뢰를, 둘째 사위에게는 무한한 지원을, 막내 사위에게는 무한한 사랑을 주는 아버지다운 아버지. 결국,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사람이다.

내조의 여왕과 함께 하는 인생.

남자가 바로 서야 집안이 바로 선다. 아니다. 집안이 바로 서야 남자가 바로 선다.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기억이 있느냐는 인터뷰어의 질문에 그는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는 표정을 지었지만, 말을 아끼는 듯 했다.

경기불황이 계속되고 수천만원의 인건비를 도저히 지불할 수 없는 사업 최대의 위기와 맞닥뜨렸을 때. 헤어 나올 수 없이 힘들어하는 그를 다독이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준 사람이 바로 그의 아내이다. 시장 상인들에게 작게는 몇 천원부터 많게는 몇 백만원까지 한 푼 두푼 빌려 비닐봉지에 차곡차곡 담아오면서 그의 아내가 한 말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고 한다. “당신, 분명히 다시 일어설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 한푼 두푼 모아온 그 돈을 다 갚고 나서 미안한 마음에 그는 아내에게 단 한마디도 건넬 수 없었다. 평소 무뎠던 성격에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지 않았던 터라 아내의 따뜻한 마음이 더욱 사무치도록 슬펐다고 한다.

그리고 1998년, 어마어마한 금액의 추징금을 감당해야 했던 세무 조사 후 그는 망연자실한 상태로 다시 또 주저앉고만 싶었다. 하나가 해결되면, 또 하나를 해결해야 하는 날이 반복될 때쯤 순탄히 넘어갈 수 있게 도와준 것 역시 아내이다. “괜찮아요, 내가 배추장사라도 하면 되죠. 너무 걱정말아요, 잘 해결되겠죠.” 그녀의 말 한마디 덕에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또 한번의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고 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그의 아내가 궁금했다. 사람 볼 줄 아는 딸들의 안목도 분명 그녀에게서 배운 것이리라.

회사가 힘들다는 말을 아내에게 할 수 밖에 없는 위기의 남자. 그런 남자를 지켜주고 용기를 주는 현명한 여자.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부부는 서로에 대한 믿음과 의리로 함께 울고, 함께 극복해

나간다. 서로를 보듬는 그때의 그 마음이 지금까지 버티는 김재진 사장의 인생에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지금 여기서, 인생은 다시 시작.

김재진 사장은 건축업을 하시던 부친을 따라다니며 온갖 허드렛일을 하다가 부산 지하철 제1호선 공사 당시 서면 지하상가 신축현장에서 인력관리감독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건설업에 뛰어들었다.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는 주식시장과도 같은 건설업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30년을 하루같이 바쁘게 살아온 그는 어느새 환갑의 나이를 훌쩍 지나 다시 설 곳이 없다고 생각하다가도 오늘, 지금 여기서 인생이 다시 시작된다고 늘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가고 있다.

긍정적이고 따뜻한 마음으로 지금을 사는 그의 가정에, 그리고 그의 활기찬 사업장에도, 2015년 역시 평온함이 깃들기를 기원한다.



** 덧붙이는 이야기

2003,2009,2010년 세 차례에 걸쳐 대한주택공사 우수시공업체상을 수상한 ㈜영빈건설은 1992년에 설립되었고 1999년에 또 다른 법인인 ㈜동원종합건설이 설립되었다. 현재 국내 건설업계에서 정직하고 성실한 업체라는 평판을 들으며 건설하게 운영해 나가고 있다.

건설산업정보 PART 1.

**세부목차

- ❖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개정 36
- ❖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37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38
- ❖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39
-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40
- ❖ 국제입찰 대상공사 고시금액 변경 41
- ❖ 지방계약예규 개정 42

❖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개정

국토교통부에서는 10월 23일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과 관련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을 개정·시행 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개정 주요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633호, 2014.10.23】

□ 하도급심사기준의 열람 폐지(제3조 삭제)

현 행	개 정
제3조(하도급심사기준의 열람) 발주자는 입찰에 참가하는자(수의시 담자를 포함한다)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현장설명시에 하도급계약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하도급 세부심사기준 2.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양식 및 작성요령 3. 기타 필요한 사항	〈삭 제〉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예규·지침·고시·통첩에서 확인 가능하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표준시장단가제도 도입, 장기계속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기산일 개선 등

기획재정부에서는 11월 4일자로 건설공사 계약단가 현실화를 위한 실적공사비 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실적공사비제도는 건설공사 계약단가 현실화를 위해 '표준시장단가제도'로 변경되고, 예정가격 산정기준도 계약단가 단일항목에서 시공단가, 입찰단가 등 이미 수행한 공사의 시장거래가격까지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개정되어 내년 3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또한, 장기계속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기산일을 개선, 목적물 전부가 아닌 일부를 완공·인도 시에도 해당부분에 대해 그 시점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기산토록 하는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25679호 및 기획재정부령 제443호, 2014. 11. 4】



1. 건설공사 계약단가 현실화를 위한 실적공사비 제도 개선

- 명칭 : 실적공사비 → 표준시장단가
- 산정기준 : 계약단가 → 계약단가, 시장거래가격(시공단가, 입찰단가 등)
▶ 시행일 : '15. 3. 1

2. 국가계약법쟁의 실효적 구제를 위한 분쟁조정위원회 심사대상 확대

- 입찰참가자격, 낙찰자 결정 외에 계약금액조정, 지체상금, 계약기간 연장 등 추가
▶ 시행일 : '14. 11. 4

3. 입찰참가자격제한의 과징금 납부대체 가능 사유 확대

- 천재지변, 급격한 경제변화 외에 책임이 경미하여 재발위험 적은 경우 추가
▶ 시행일 : '15. 1. 1

4. 장기계속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기산일 개선

- 목적물 전부 아닌 일부 완공·인도시에도 해당부분에 대해 그 시점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 기산

5. 하자담보책임기간 개선

- 국가계약법과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상이
→ 국가계약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기간 준용
※ 단, 자갈도상 철도공사(궤도공사 부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
▶ 시행일 : '14. 11. 4일 이후 계약체결일부터
-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홈페이지(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최근개정법령에서 확인 가능하다.



건설산업정보 PART 1.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우수 건설업자 다른 업종 등록시 자본금의 1/2을 감면 등

국토교통부에서는 11월 14일 건설업을 15년 이상 영위하고 10년간 제재처분이 없는 우수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 등록시 자본금의 1/2을 감면토록하고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당사자 참여를 의무화하고, 수급인이 공공공사를 70% 미만으로 도급(낙찰)받은 경우 하도급자 요청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내용 등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되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727호, 2014. 11. 14】

가. 주요내용

- 건설업을 15년 이상 영위하고 10년간 제재처분이 없는 우수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 등록시 자본금의 1/2을 감면(영 제16조 제3항 신설)
 - 다른 전문건설업종 등록시 자본금 및 기술자 1/2 특례를 받은자도 우수 건설업자에 해당되면 다른 전문건설업종 등록시 자본금에 대해 1/2을 감면함.
 - 우수건설업자로 자본금 1/2 특례적용 후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60일 이내로 최저 자본금 기준을 갖추어야 함.
-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건설산업정보망 등에 3년간 공개(영 82조의3부터 제82조의7까지 신설)
 - 공표내용 : 상습체불건설업자의 성명·나이·상호·주소, 명단 공표 직전연도 부터 과거 3년간 상습체불건설업자의 처분 이력 및 체불 대금 내역
- 하도급공사 계약자료의 공개 대상 공공기관 및 공개 방법(영 제34조의3 신설)
 - 하도급공사 계약자료를 공개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으로 정하고, 하도급공사 계약자료의 공개는 하도급 등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사를 발주한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40호, 2014. 11. 14】

가. 주요내용

- 수급인이 공공공사를 70% 미만으로 도급(낙찰)받은 경우 하도급자 요청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함.(규칙 제29조제6항)

3. 시행일자 : '14. 11. 15(토)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최근개정법령에서 확인 가능하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분리발주 가능한 지자체 공사 구체화, 분리발주 여부 사전검토 의무제 도입

행정자치부에서는 11월 24일자로 분리발주가 가능한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의무적으로 분리발주 여부를 사전 검토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또한,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은 1인의 견적만으로도 지방자치단체 또는 계약담당자가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범위를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일부 중 입찰 무효사유가 있더라도 나머지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은 유효하게 됐다. 이 밖에도 단가계약의 경우 여러 차례 분할해 계약 이행시 이행 완료된 부분은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개정된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계약법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25770호, 2014. 11. 24】



1. 분리발주가 가능한 공사의 범위 명확화

- 분리발주 가능 공사 추가
 -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과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 계약담당자에게 공사의 예산편성,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리발주 가능여부의 검토 의무 부여
 - ※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위한 분리발주 금지

2.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 체결할 수 있는 범위 확대

-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 체결할 수 있는 범위 확대

3. 공동수급체의 입찰 무효사유 명확화

- 공동수급체 구성원 일부 중 입찰 무효사유 있더라도 나머지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자격 갖출 수 있는 경우 입찰 무효 제외



4. 단가계약의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대상 축소

- 여러차례 분할해 계약 이행시 이행 완료된 부분은 제외
 - ▶ 시행일 : 2014. 11. 24
-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최근개정법령에서 확인 가능하다.

건설산업정보 PART 1.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 실효성 확보 등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2014년 11월 27일부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하도급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보증토록하고 어음·어음대체결제수단 지급시 만기일(상환기일)까지 지급 보증토록 하였으며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사유 소멸시에 대한 요건을 명시하는 등 하도급법 및 시행령을 개정·시행 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도급법 및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1. 하도급법(법률 제12709호) 개정 주요내용

가. 원사업자·수급사업자 하도급법 적용대상 명확화(제2조제2항제2호 개정)

(현행) 해당연도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

(개정) 하도급계약 체결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

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실효성 제고(제13조의2제1, 2, 8항)

(1)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보증(제1항 개정)

(2) 어음어음대체결제수단 지급시 만기일(상환기일)까지 지급보증(제1항 개정)

(현행)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여야 함.

(개정) _____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_____ 보증(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 어음 대체결제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함)하여야 함.

(3) 지급보증 면제사유 소멸시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보증(제2항 신설)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② 신용평가 결과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③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4)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불이행시 계약이행보증 청구 불가(제8항 신설)

다. 분쟁조정협의회 운영비용(경비) 국비 지원 근거 마련(제24조 제9항 신설)

2. 하도급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883호) 개정 주요내용

가.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에 요구되는 누산벌점 하향 조정

· 입찰참가 제한 요청 : (현행) 10점 ⇒ (개정 안) 5점

· 영업정지 요청 : (현행) 15점 ⇒ (개정 안) 10점

3. 시행일자 : 2014. 11. 27부터 시행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최근개정법령에서 확인 가능하다.



❖ 국제입찰 대상공사 고시금액 변경

관공사 국제입찰금액 82억원으로 하향

기획재정부는 12월 11일 내년 1월 1일부터 2016년 말까지 적용될 정부 조달계약의 국제 입찰 대상 금액을 변경해 고시했다.

중앙행정기관 발주 공사의 국제입찰 대상금액은 87억원에서 82억원으로, 공공기관 발주 공사도 국제 입찰 대상 금액은 262억원에서 245억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됐다.

대상기관	지역제한경쟁입찰		지역의무공동도급	
	'13~'14	'15~'16	'13~'14	'15~'16
중앙행정기관	87억원	82억원	87억원	82억원
공공기관	87억원	82억원	262억원	245억원

정부는 또 국제 입찰 대상 기준금액 미만으로 적용되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와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 공사 규모도 축소키로 했으며, 중앙행정기관이 발주하는 경우 두 제도 모두 기준금액이 87억원에서 82억원으로 바뀌고, 공공기관 발주 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는 262억원에서 245억원으로, 지역제한경쟁입찰제도는 87억원에서 82억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예규·지침·고시·통합에서 확인 가능하다.



건설산업정보 PART 1.

❖ 지방계약예규 개정

분리발주 대상공사 구체화 등

행정자치부에서 2014년 12월 19일자로 분리발주 대상공사 구체화 등 지방계약 예규를 개정하고 2015년 1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된 지방계약예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계약예규 개정 주요내용

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가. 협상에 의한 계약 적용대상 명확화

(현행) 전시관 · 박물관 · 학습관 등
(개정) _____ 학습관

나. 협상에 의한 계약 남용 금지조항 신설

(신설) 특별하고 독창적인 디자인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발주를 금지하고, 사업부서가 계약 부서를 경유해 감사부서에 협상계약 타당성 검토 요청

2.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가. 분리발주 대상공사 구체화

- 관계법령 등에 따라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 다른 공종과 시공 목적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공사
- 선 · 후행 또는 병행되는 다른 공종의 공사와 상호 영향을 미치지 않아 개별적인 시공이 가능한 공사
- 다른 공종과 시공장소(작업위치)가 달라 독립적인 시공이 가능한 공사

나. 분리발주 검토 의무화

- 계약담당자에게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리발주 가능여부 검토 의무 부여. 단,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위한 분리발주 금지

다. 계약담당자 주의사항에 현장대리인 관련규정 추가

- 현장대리인을 불필요하게 현장에 상주시키는 사례 금지

3. 제한입찰 운영요령

가. 실적제한 인정기준 명확화

(현행) 입찰공고일 기준 검사완료 실적으로 제한
(개정)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_____
(이유) 실적제한입찰시 실적인정기준을 명확화 하기 위함

4. 수의계약 운영요령, 공동계약 운영요령

가. 여성 및 장애인기업 1인견적 수의계약 대상금액 확대

(현행)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공사는 1인 수의계약 가능
(개정) _____ 5천만원 _____

(이유) 사회적 배려대상 기업인 여성 및 장애인기업의 1인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하기 위함.

나.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 명확화

- 공사의 경우에만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발주

5. 입찰유 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선금 및 대가지급요령

가. 입찰 무효사유 명확화

- 입찰 참가 대표자가 동일입찰 참가 타사의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 일부 중 입찰 무효사유가 있다라도 나머지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자격 충족시 입찰 무효 제외



나. 단가계약 이행완료부분에 대한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제외

(현행) 계약이행 과정에서 중도 해지 시에는 계약보증금 전액을 발주기관에 귀속
(개정) 단가계약으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이행 완료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귀속시키지 않음
(이유) 계약을 이행한 부분에 대한 면제사유가 없어 입찰자에게 불합리한 제도 개선하여 입찰참가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다. 선금지급 대상 확대

- (현행) 공사 · 물품제조 3천만원, 용역 1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선금금을 지급
- (개정) 선금 지급시 계약금액에 관계없이 지급
- (이유) 영세기업 등의 경영지원을 위하여 선금지급 기준금액 범위를 삭제
- ▶ 시행일자 : 2015. 1. 5(월)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최근개정법령에서 확인 가능하다.



01 힐링영양 1관 <오늘의 연애>

한없이 가벼워진 오늘날의 사랑에 대한 일침! 이제 씬 끝내고 "진짜 연애"하자!

총무로 배우 이승기와 문채원이 드라마 <찬란한 유산>에 이어 <오늘의 연애>에서 만났다.

가요, 예능, 드라마를 이어 스크린에 도전하는 이승기는 <오늘의 연애>에서 해 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데 100일도 못 가 항상 여자친구에게 차이는 초등학교 교사 준수를 맡았다. 그런 준수(이승기)에게는 특별한 씬녀가 있다. 바로 요즘 가장 인기 있는 기상캐스터 현우(문채원).

매일 밥 먹고 영화보고 데려다 주고 손도 잡고 위급할 때마다 도와주고 오피스텔 비번까지 아는 사이지만 애인은 아닌, 술 먹자고 불러내면 다른 남자 때문에 우는 그녀.

준수의 어린 시절 고백 따위는 물어두는 쿨한... 18년(!) 친구다. 영화 <오늘의 연애>는 최근 대한민국 남녀의 가장 뜨거운 연애 트렌드 '씬'을 담아낸 현실공간 로맨스 영화다. 18년째 진전도 없고 정리도 힘든 복잡미묘한 사이를 이어가는 '준수(이승기)'와 '현우(문채원)'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오늘의 연애>는 데이트는 OK, 하지만 애인은 아닌 관계, 뜨겁게 끌리지도 그렇다고 나쁘지도 않은 감정 등을 담아내며 요즘 남녀들의 복잡미묘한 관계를 리얼하게 그리고 있다. 데이트는 하는데 다른 사람과도 씬을 타고, 언제든 전화가 오면 달려가며, 상대방의 마음을 알면서도 받아주지는 않은 채 끊임 없이 애를 태우는 영화 속 캐릭터들은 현실 속 씬남씬녀의 모습을 고스란히 반영하며 깊은 공감을 자아낸다.



2관 <신세계 비하인드 스토리>



- 신세계에 가장 먼저 캐스팅 된 건 강과장 역의 최민식이다.
- 박훈정 감독은 정청영으로 황정민을 제외하고 차순위 캐스팅 후보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 섭외당시, 최민식은 이정재에게 전화로 "너 나랑 작품 하나 같이하자."라며 짧게 말했고 제의를 받은 이정재는 다른 작품을 고사하고 바로 신세계에 합류했다.
- 정청은 공항에서 발이 아파 슬리퍼를 신고 나오는데, 이는 황정민이 만들어 낸 설정이다.
- 정청의 대사 절반은 황정민의 애드립이다.

02 힐링캠프 겨울여행 추천여행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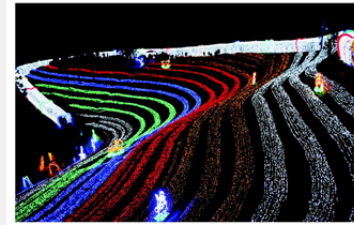
*겨울 산행 아름다운 설경 '태백산'

태백산은 산세가 비교적 완만해 눈꽃 산행으로 최적이다. 태백산은 완만 산세 때문인지 경관이 빼어나지는 않지만 태백산만의 웅장하고 장중함이 있다. 자연이 만들어낸 보석 설화가 펼쳐진 태백산은 천년불화의 명산이다.



*동양 최대 목장 '삼양목장'

영화 '내 여자 친구를 소개합니다', 드라마 '가을동화' 등의 촬영지로도 잘 알려진 삼양목장은 고지가 높아 바람이 심하다. 삼양목장에 가면 풍력발전기도 볼 수 있는데 목장 정상에서 보면 풍력발전기가 더욱 잘 보인다.



*충충이 쌓인 눈 전남 '보성녹차밭'

보성녹차밭은 녹차잎이 초록빛으로 빛나는 봄이나 여름에 유명하지만, 설경 또한 빼어나다. 눈으로 이불을 덮은 듯한 녹차밭이 충충이 쌓여져 무늬를 만들어 낸다. 보성 녹차밭은 매년 빛축제를 열고 있다.

건설산업정보 PART 2.

**세부목차

- ❖ 조경수목 자연재해 하자분쟁 조정 신청 안내46
- ❖ 불공정 하도급 대리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 안내47
- ❖ 건설공사 비탈면 보강공사용 앵커 및 네일 설계 해설 안내47
- ❖ 환기구 등 건축물 설계 시공시 건축구조기준 준수 철저47
- ❖ 굴착공사 신고제도 안내47
- ❖ 건설업체 신고(통보) 의무 철저 준수48
- ❖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 개시 안내49
-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시행49
- ❖ 화약류운반 신고시기 개선 안내49
- ❖ 2015년도 건설업 외국인력 고용허가신청 안내50
- ❖ 2015년도 노동관련 각종 요율 고시50

❖ 조경수목 자연재해 하자분쟁 조정 신청 안내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로 분쟁 조정 신청

부산시회는 11월 10일 자연재해 등 불분명한 하자 판정으로 인한 분쟁 발생시 건설분쟁조정위원회로 하자분쟁 조정 신청이 가능함을 회원사에 안내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조경수목은 실외에 위치하여 자연재해로부터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으며, 자연재해로 인한 분쟁 발생시 명확한 판정기준이 없어 대부분 시공사에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조경식재공사업을 등록한 전문건설업체들의 기업경영상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협회에서는 자연재해 관련 분쟁 발생시 객관적인 조정을 위하여 「조경수목 자연재해 판정기준」 마련을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동 기준 마련 전까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 69조에 의한 「건설분쟁조정위원회」로 조정 신청이 가능하며, 조경수목 자연재해 분쟁 발생시 하자책임 전가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했다.

• 건설분쟁조정위원회

1. 법적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
2. 기능 : 건설업에 관한 분쟁 조정
 - 가. 건설공사에 관계한 자 사이의 책임 분쟁
 - 나. 발주자와 수급인간 분쟁, 건설공사 하도급에 관한 분쟁, 수급인과 제3자인 시공상 책임, 보증책임 분쟁
 - 다. 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분쟁 등
3. 대상공사규모 : 제한없음
4. 분쟁조정신청 :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044-201-3508)

❖ 불공정 하도급 대리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 안내

우리협회에서는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 발생시 신고인의 신원을 보호 하면서 하도급불공정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우리협회가 대신 신고할 수 있는 「불공정 하도급 대리신고 센터」를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설치·운영한다.

신고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신고·제보 신고서를 작성하여 부산시회에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가능하며 처리절차는 ①신고·제보시례 중앙회 통보 ② 중앙회에서 협회 명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조사 담당부서(기업거래정책과)에 신고 ③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직권조사 실시하게 되어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회 건설정책과(☎051-633-0261)로 문의하면 된다.

❖ 건설공사 비탈면 보강공사용 앵커 및 네일 설계 해설 안내

비탈면 보강 설계시 참고자료 제공

한국시설안전공단은 비탈면의 보강공사용 앵커 및 네일 설계 관련 실무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국토교통부, 2011)을 기초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건설공사 비탈면 보강공사용 앵커 및 네일 설계 해설집」을 발간하였다.

동 자료는 비탈면 설계시 앵커 및 네일 설계와 관련하여 일관성 있고 상세한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설계자의 임의 판단, 국외 기준의 무분별한 도입 등으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앵커 및 네일 설계시 비탈면의 붕괴 방지 및 안정성 확보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부산시회는 비탈면 보강공사 설계시 회원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 하였으며, 관련 자료는 시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다.



❖ 환기구 등 건축물 설계 시공시 건축구조기준 준수 철저

지하주차장의 환기구 등도 건축물의 일부, 안전사고 대비 건축구조기준 반영토록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에 이어 경기 고양터미널 화재, 장성 요양병원 화재, 서울 지하철 사고, 판교 환기구 붕괴 등에 따른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지하주차장의 환기구 등도 건축물의 일부이며 「건축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산시회는 환기구를 포함한 건축물 및 시설물 설계·시공시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구조기준을 준수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회원사에 안내했다.

❖ 굴착공사 신고제도 안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도시가스 사업법 제30조의 3에 의거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EOCS)에 공사계획 신고 및 굴착공사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입회요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굴착공사시 법정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도시가스 지하매설 배관의 파손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회원사에서 굴착공사 시공시 주의를 요한다.

〈굴착공사 신고제도 주요내용〉

1. 굴착공사 신고대상
 -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도로, 아파트 단지, 사유지 포함)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수작업 제외)
2. 신고처
 - 전화 1644-0001(상담사 안내)
 - 인터넷 eocs.or.kr
 - 모바일 meocs.or.kr
3. 신고절차
 - 굴착신고 ▶ 접수번호발급(온라인) ▶ 배관유무확인(한국가스안전공사) ▶ 안전조치 (한국가스안전공사) ▶ 굴착계시통보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 입회요청 (굴착자 → 한국가스안전공사) ▶ 공사개시
4. 미신고시 벌칙사항
 - 도시가스 사업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입회요청 없이 임의굴착 하는 경우도 같은 처벌)

건설산업정보 PART 2.

❖ 건설업체 신고(통보) 의무 철저 준수

건설산업기본법령 관련 주요 신고 및 통보제도 속지

부산사회에서는 11월 24일 회원을 대상으로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및 기재사항 변경신고 지연, 주기적 신고 미이행, 건설기술자 미배치 등으로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건설산업기본법령 관련 주요 신고 및 통보제도에 대해 안내하고 필히 숙지하여 행정처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할 것을 안내했다.

〈건설산업기본법령 관련 주요 신고 및 통보제도〉

1. 건설공사 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 가. 통보대상
 -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민간공사 포함)를 도급받은 건설업자
 -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 (원도급공가 1억 이상일 경우에 한함)
- ※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 계약사항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변경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

- 나. 통보시기 : 계약일 또는 변경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다. 통보방법 :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통보
- 라. 위반시 제재사항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 시정명령(법 제81조 제3호)
 - 시정명령 불이행시 :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400만원 과태료 부과(법 제99조제3호 및 제10호)

2. 건설업 등록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고

- 가. 건설업 등록증,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사항 중 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법인(주민)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 나. 신고방법 : 관련서식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분사 소재지 관할 구·군청 및 우리사회에 신고
- 다. 위반시 제재사항 : 과태료(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50만원)

3.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주기적 신고

- 가. 건설업최초등록 또는 주기적(갱신)신고 후 3년의 기간이 경과한

-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 나. 신고방법 : 관련서식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분사 소재지 관할 구·군청 및 우리사회
- 다. 위반시 제재사항
 - 미신고시 : 시정명령 ⇒ 불이행시 등록말소
 - 허위통보 : 등록말소
- ※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자,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등)은 상시 충족해야 함.

4. 건설기술자 현장배치의무

- 가. 건설업자는 건설공사 현장에 공사금액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를 1인 이상 배치하고, 배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건설기술자는 현장배치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함
- 나. 공사에정금액 5억원 미만의 동일 종류의 공사 및 이미 시공 중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새롭게 행해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는 발주자 승낙을 받을 경우 1인 건설기술자를 3개 공사현장까지 배치 가능.
- 다. 통지방법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라. 위반시 제재사항
 - 미배치시 : 시정명령
 - 시정명령 불이행시 영업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기술자 이탈시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 개시 안내

조달청, 입찰 해킹 가상PC 활용 원천 봉쇄

부산사회는 11월 14일 조달청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 전환 후 회원사에서 입찰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2014년 12월 말까지 안전 입찰서비스를 사전에 설치하여 이용방법을 숙지할 것을 안내했다. 조달청에서는 조달기업 PC의 해킹을 원천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가상PC를 사용토록 하는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10월 31일부터 시범 가동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기존 웹방식과 안전 입찰서비스를 병행 사용한 후 2015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안전 입찰서비스로 전면 전환할 예정이다.

1. 안전 입찰서비스란?
 - 이용자 PC에서 주요 기능이 처리되는 투찰 업무를 기존 물리적인 PC와 분리해 별도의 가상PC를 사용, 안전하게 입찰서를 제출토록 지원하는 서비스
2. 안전 입찰서비스 설치방법
 - 컴퓨터의 운영체제(32비트/64비트)에 맞춰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하단의 안전 입찰서비스 S/W를 다운로드 받아 설치
 - ※ 입찰서 제출은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가 정상 가동되면 기존 나라장터 웹방식과 동일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 ⇒ 회원 전용공간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시행

2014. 12. 1일부터 모든 건설현장에 적용, 건설일용근로자 채용시 이수증 필히 확인

건설업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거 건설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토록 해야 한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란 건설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시 안전보건교육을 대체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된 위탁 전문교육기관에서 1회(4시간)만 이수토록 개선된 안전보건교육 제도이며, 타 현장 이동시 교육 이수증만 지참하면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 동 교육은 2012. 6. 1일부터 1,0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에 적용되어 건설공사 규모별 단계적으로 시행되었으며, 2014. 12. 1일부터는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됨에 따라 회원사에서는 필히 숙지하여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 채용시 이수증을 확인해야 한다. 이수증이 없는 일용

근로자는 교육이수 후 현장에 투입해야 하며, 교육을 미실시한 일용근로자를 현장에 투입할 경우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과태료를 부과(1차 : 5만원, 2차 : 10만원, 3차 : 15만원)된다. 또한,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의 의무이므로 교육 소요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내역서에 반영되어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면 된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위탁 전문교육기관은 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 홈페이지에서 각 지역별로 조회가 가능하다.

❖ 화약류운반 신고시기 개선 안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개정

우리협회는 토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 화약을 주로 사용하는 전문건설업체의 경영여건을 해소하고 현장여건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개선)하기 위해 경찰청, 규제개혁위원회 등 관계요원에 개선을 건의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한 결과, 지난 5. 1일 화약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하던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회비(사용량 1kg당 5원)를 폐지하였다. 이어, 종전 4시간 전까지 신고토록 하던 화약류 운반 신고를 운반개시 1시간 전까지만 해도 되도록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을 개정(‘14.10.28)하였으며, 개정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 전	개 정('14.10.28시행)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
• 화약운반시 4시간 전까지 경찰서 신고	• 화약운반시 1시간 전까지 경찰서에 신고



건설산업정보 PART.2

◆ 2015년도 건설업 외국인력 고용허가신청 안내

정부는 2015년도 외국인력 배경계획을 공고하고, 건설업 외국인력에 대한 고용허가신청 접수를 실시할 계획에 있어 부산시회에서는 외국인력 고용계획이 있는 회원사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안내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5년 건설업 외국인력 고용허가신청 주요내용)

1. 건설업 신규외국인력 인원 : 2,300명(재입국 20명 포함) + α
* α : 추가도입 인원(1,900명)을 고용개시 후 업종별 경쟁률(신청 현황)에 따라 추가 배정

2. 사업장 외국인력 고용허용인원

연평균 공사금액 (원도급자 총 공사금액 기준)	외국인 고용 상한 인원
15억원 이상	공사금액 X 0.4(신규 0.3) (현장별 최대 30명)
15억원 미만	5명(신규 3명) 계수 미적용

- * 연평균공사금액 = 총공사금액 X (12/총공사기간(월))
총공사금액은 원도급자가 발주자와 체결한 계약금액
현장별 허용인원은 연평균공사금액으로 산정(최대 30명)

3. 외국인력 배치 절차

- ① 고용허가신청서(고용센터) 접수
- 고용센터 직접방문 및 인터넷 신청(www.eps.go.kr)
- ② 고용허가 요건 검토 및 사업장 풀 구성
- ③ 접수부여 및 고용허가 사업장 확정
- ④ 고용허가서 발급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쳐야 합니다.

4. 고용허가서 신청 및 발급일정

- 가. 접수 : 1, 2(금) ~ 1, 20(화)
- 나. 대상확정 : 1, 22(목) ~ 2, 5(목)
- 다. 대상자 안내 : 2, 6(금) 14:00
- 라. 건설업 고용허가서 발급 : 2, 10(화) ~ 2, 13(금)

-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 ⇒ 회원전용공간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2015년도 노동관련 각종 요율 고시

• 건강보험요율

년 도	보 험 요 율
2013	보수월액 X 5.89%
2014	보수월액 X 5.99%
2015	보수월액 X 6.07%

- 직장보험료 부과등급제 폐지(2007.1.1)로 보험료 산정 보수기준이 종전 "표준보수월액"에서 ⇒ "보수월액"으로 변경됨.
- 2015년도 가입자부담 3,035(50)%, 사용자부담 3,035(50)%씩 각각 부담
- 노인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6.55%(사용자 6.55%, 근로자 6.55%씩각각 부담)

• 연금보험요율

년 도	보 험 요 율
2013	표준소득월액의 9%
2014	표준소득월액의 9%
2015	표준소득월액의 9%

- 2015년도 가입자부담 4.5(50)%, 사용자부담 4.5(50)%씩 각각 부담

• 고용보험료를 산정기준

사 업 별	보 험 료 율	산 정 기 준
실업급여 (공통 부담)	13/1,000(1.3%)	사용자 부담 6.5/1,000(0.65%) 근로자 부담 6.5/1,000(0.65%)
고용안정사업	2.5/1,000(0.25%)	상시근로자 150인 미만
직업능력개발사업 (사용자 부담)	4.5/1,000(0.45%)	상시근로자 150인 이상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
	6.5/1,000(0.65%)	상시근로자 1,000인 미만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외업체
	8.5/1,000(0.85%)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 실업급여요율, 고용안정, 직업능력 전년과 동일

• 산재보험료율(천분율)

사 업 종 류	년 도				
	2011	2012	2013	2014	2015
일반건설공사(갑)	36	37	37	38	38
일반건설공사(을)					
중간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건설공사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의관한법을 제14조 제3항 및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3조등 의하여 사업종류별 보험요율을 고시함.

• 노무비율(백분율)

사 업 종 류	년 도				
	2011	2012	2013	2014	2015
일반건설공사(갑)	28 (32)	28 (32)	28 (32)	28 (32)	27 (31)
일반건설공사(을)					
중간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건설공사					

- () 안은 하도급 노무비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 공사의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보험료의 산출기초가되는 임금을 결정하기 관련한 경우에 적용할 노무비율을 고시함.

• 건설업 월평균임금

년 도	건설업 월평균임금
2011	3,007,852원
2012	2,597,274원
2013	2,784,717원
2014	2,953,800원
2015	3,157,765원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시행령 제 2조 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해 고시함.

• 최저임금 및 기준임금

년도	최저임금		건설업 기준임금	
	시간급	월 급	시간급	월 급
2012	4,580	36,640	957,220	12,427
2013	4,860	38,880	1,015,740	13,324
2014	5,210	41,680	1,088,890	14,133
2015	5,580	44,640	1,166,220	15,108

- 최저임금은 2015.11 ~ 2015.12.31까지 적용
- 월급은 월 209시간 기준(2011.7.1부터 5인 이상 의무적용)

- 고용보험법 제2조의2, 동법시행령 제1조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4조의2, 동법시행령 제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폐업도산등으로임금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임금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인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파악이 곤란한 경우 등에 적용되는 기준임금 및 그 적용기간을 고시함.

• 장애인 고용의무대상 사업주 범위 및 고용부담기초액

년 도	사업주 범위(이상)	고용부담기초액 (1인당/월)
2011	70억 4천 9백만원	560만원
2012	62억 4천 6백만원	590만원
2013	69억 0천 9백만원	626만원
2014	69억 0천 9백만원	670만원
2015	69억 0천 9백만원	710만원

- 총공사실적 기준, 2015년 의무고용률 3.1%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장애인고용 의무적용대상 공사 실적액을 고시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을 고시함.

• 임금채권보장기금,석면피해분담금사업주부담금 비율

년 도	임채부담금비율(%)	석면부담금비율(%)	비 고
2011	0.8/1,000	0.05/1,000	
2012	0.8/1,000	0.05/1,000	
2013	0.8/1,000	0.04/1,000	
2014	0.8/1,000	0.04/1,000	
2015	0.8/1,000	0.04/1,000	

-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을 고시함.(2011년부터 보수총액기준)
- 석면피해구제분담금(2011년 신설),2010.12월부터 감감비율 감소(25%)





- 개인지도** : 개가 사람을 가르친다.
- 남녀평등** : 남자나 여자나 모두 등이 평평하다.
- 돼지방구** : 돈가스를 순수한 우리말로 바꾼것.
- 동문서답** : 동쪽 문을 닫으니까 서쪽 문이 답답하다.
- 동방불패** : 동사무소 방위는 불쌍해서 패지도 않는다.
- 박학다식** : 박사와 학사는 밥을 많이 먹는다.
- 백설공주** : 백방으로 설치고 다니는 공포의 주둥이리
- 부전자전** : 아버지가 전씨면 아들도 전씨.
- 삼고초려** : 쓰리 고를 했을 때에는 초단을 조심하라
- 아편전쟁** : 아내와 남편의 부부싸움.
- 요조숙녀** : 요강에 조용히 앉아있는 숙녀
- 원앙부부** : 원한과 앙심이 많은 부부.
- 천재지변** : 천변 봐도 재수없고 지금 봐도 변함없는 사람
- 홍길동전** : 붉은길에 떨어져 있는 동전.
- 황당무계** : 노란 당근이 무계가 더 나간다



무기수들이 드디어 탈옥을 하기로 결심했다.
창문으로 끈을 늘어뜨리고 한 사람이 타고 내려갔다.
얼마 후, 다시 올라온 그 사람 왈,
"안 되겠어. 끈이 너무 짧아."
이번에는 수건이나 속옷들을 모두 모아 끈을 길게 하여 늘어뜨리고 다시 내려갔다. 한참 후 다시 올라와서 하는 말

"아무래도 안 되겠어. 이번엔 너무 길어."



토끼와 달팽이

너 정말 지긋지긋하다!



거북이와의 경주에서 진 토끼가 씩씩대며 집으로 돌아가 분을 삭히고 있는데 '뚝뚝' 하는 소리가 들렸다. 대문을 열어보니 달팽이가 자신을 쳐다보며 서있는 게 아닌가! "너 거북이한테 졌다며? 푸하하하! 얼레리~ 꼴레리~ 토끼는 거북이보다 달리기도 못하대요."

달팽이의 말에 화가 난 토끼는 달팽이를 뺨~ 치버렸다. 그리고 1년 뒤, 1년동안 운동을 열심히 한 토끼는 다시 거북이에게 도전장을 보냈고, 며칠 후에 경주를 했는데 또 지고 말았다. 또 다시 집에서 씩씩대고 있는데 이번에도 문에서 '뚝뚝' 하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어보니 1년 전 그 달팽이가 와 있었다. 놀란 토끼왈, "너 또 놀리려고 왔냐?" 라고 물었더니 달팽이 왈

"너 지금 날 발로 찼냐?"

국토교통부 부실업체 조기경보 시스템 도입 및 시행

국토교통부 「부실업체 조기경보 시스템(2014. 9. 도입)」은 건설업체의 재무정보, 기술인정보, 보증정보 및 각종 건설업 관련 정보들을 자동으로 분석하여 건설업 영위를 위한 등록기준을 상시 점검하고 불법·불공정행위를 상시 적발하는 시스템임.

→ 주기적신고 제도 폐지 대안 및 매년 실시하고 있는 실태조사로 발생하는 경제·행정적 업무 부담 해소를 위해

1.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미달 추정 업체 조사

가. 국토교통부에서는 「부실업체 조기경보 시스템」운영 개시 후, 2014. 12. 건설업 영위를 위한 등록조건 중 하나인 자본금 기준미달 의심업체 파악함.

자본금 기준미달 의심 전문건설업체 현황

구분	전국	부산	비고
건 수	10,336개사	404개사	기계설비공사업 및 시설물유지관리업 포함

나. 조사대상 선정 방법 : 신용평가 미신청업체, Kison 자본금 미달 의심업체, 국제청 미달의심업체 통보

다. 향후 자본금미달 추정 업체의 본점소재지 구(군)청 통보(Kison, 2014. 12. 중) 후 청문회 실시 이후 자본금 미달 사실업체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됨.

2. 불법·불공정 행위 점검

- 하도급 제한(불법하도급) 위반 및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미발급 등



KOSCA 중앙회 업무단신

01

코스카 중앙회 표재석 회장은 최근 산림업계와 업역 다툼이 있는 도시림, 가로수 등의 수목병해충 방제사업이 조경식재공사 업무범위(유지관리)도 해당한다는 국토부 해석을 받아 산림청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등 전문건설 업역침해 방지를 위해 노력 중임

02

11월 4일 코스카 중앙회 표재석 회장은 새누리당 김무성 당대표와의 간담회에 참석하여 국회에 계류중인 전문건설업계의 원도급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소규모 단순 복합 공사 범위 확대」법안의 조속한 법제화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활성화」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건의하여 지속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얻었음



우리사회 2015년 1/4분기 주요일정 안내

※ 협회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 자	주요행사명
2015. 1. 9(금)	2015년 신년인사회
2015. 1. 13(화)	2015년 제차 회장단 회의
2015. 1. 26(월)	2015년 제차 운영위원회의
2015. 2. 2(월)	제30회 정기총회
2015. 2. 16(월)	실적신고 접수마감
2015. 2월중	제1차 회원고충해결 무료합동 상담
2015. 3월중	제1차 전문건설인 경영세미나(조찬회)
2015. 3월중	지방계약법령 강습회



유권해석

발주자의 요구로 적격심사 포기시 제재 대상 여부?

【질의내용】

적격심사 대상 1순위 입찰자의 점수가 적격통과 점수에 미달된다는 사실을 적격심사 전 입찰자 및 발주기관이 상호 확인하고 발주기관의 요청으로 입찰자가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 사안이 종료된 상황에서 발주기관에서 입찰자가 계약 체결을 하지 않았다는 것 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4호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제4절 '3'에서는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적격통과 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위 시행령 규정상 "정당한 이유"란 천재지변 또는 예기하지 못한 돌발사태 등을 포함하여 명백히 객관적인 사유로 부득이 계약 이행을 하지 못하거나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 질의와 관련하여, 입찰자의 점수가 적격통과 점수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발주기관에서 인지(실적증명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통해 적격통과 검수 미달을 확인한 경우)하고 입찰자에게 적격심사 포기서 제출을 요구하여 입찰자가 이에 따라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적격심사 서류 미제출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 이러한 경우 입찰자의 적격심사 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하여 발주기관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것은 발주기관에서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거】 조달청 재정관리과-2252, 2014.06.20



건설판례

대법원 1995.6.16. 선고 94누10320 판결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을위반행위에대한시정명령취소]

【판시사항】

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원사업자의 서면 교부시기 및 추가공사에 관한 서면교부의무

나.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9조 제2항 소정의 기간 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의 효과

다.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를 제재함에 있어 그 미지급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건설위탁에 있어 원사업자는 건설위탁을 할 때에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서 등의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늦어도 수급사업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이를 교부하여야 하고, 또 당초의 계약내용이 설계변경 또는 추가공사의 위탁 등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추가·변경서면을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나. 수급사업자가 추가공사를 포함한 하도급공사를 종료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시공완료의 통지를 받고서도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면, 원사업자가 그 통지의무를 해태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공사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되고 그 결과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공사잔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다. 원사업자가 지급기일을 경과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자체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을 위반행위가 되어 제재대상이 되고,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가 대금지급기일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루고 있는 사실 자체에 의하여 법 위반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되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룬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까지 나아가 판단할 필요는 없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주심) 김형선



회원사 질의·응답

1. 하도급공사의 공법 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시 신규비목 단가 책정방법은?

-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제14조의2에서는 증가된 공사의 단가는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로 하며,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서 낙찰율을 곱한금액의 평균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토록 규정되어 있음.

2. 국가공사의 사회보험 사후정산시 공사현장에 근무한 본사 소속 공무원직원의 보험료도 정산가능한지 여부?

- 정부일할·계약 집행기준 제17장에서는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해 정산토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공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본사사속 공무원직원의 경우 보험료 사후정산 대상이 아님.

3. 조달청 적격심사 기준 중 여성기업 등에 대한 경영상태평가시 가점과 관련하여 여성기업확인서 발급방법은?

-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청에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신청서(첨부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주명부 등)를 제출하면 중소기업청에서 사무실 방문 또는 유선으로 여성이 해당 기업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음.

4. 당초 하도급계약 체결시 건강보험, 국민연금, 퇴직공제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이 내역에 반영되어 있으나, 가산세가 지급시에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음. 시공사에 대항할 수 있는 방안은?

- 하도급 계약금액에 당초에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미지급하는 것은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시공사와 협의가 되지 않을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야 함.

5. 관공공사에 하도급으로 참여중이며, 원도급 종합건설업체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E/S)를 적용받아 설계변경을 받았을 경우 하도급자도 물가상승분에 대하여 변동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지방계약법령에서는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원사업자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지급받은 경우 조정기준일 이후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면 하수급인은 이를 적용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다만, 이미 전시공 등 사실상의 하도급거래에 관한 객관적인 사실 입증시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후에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E/S조정을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

6. 시공중인 건설현장에 산재사고가 발생할 경우, 산재처리시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금 산정방법은?

- 산재사고 발생시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금은 휴업급여, 장애보상, 유족급여, 장제비가 있음.
- ※ 산재보험금 지급기준
- 평균임금 = 일당 × 통산근로자수(73%)
- 휴업급여 = 평균임금 × 70%
- 장애보상 = 평균임금 × 장애등급요소
- 유족급여 = 평균임금 × 1,300일
- 장 제 비 = 평균임금 × 120일

7. 4개 건설현장에 한명의 일용근로자가 A현장 1일(사후정산 대상공사), B현장 17일(사후정산 대상공사), C현장 3일, D현장 4일 근무하였을 경우 건강보험 자격취득신고 여부 및 근로자로부터 원천징수 해야하는 보험료는?

- A, B현장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 적용사고가 원료된 현장일 경우 19일 미만 근무했으므로 자격취득 대상이 아님. 또한 C, D현장은 사후정산 대상공사가 아니므로 본사소속 직장가입자 기준을 적용하여 자격취득 및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 월 60시간에 미달하여 자격취득 대상이 아님.

8. 단가계약으로 체결된 도로보수 포장공사의 경우 공사현장이 상이하고, 작업기간도 불일치 함에도 불구하고 각 현장별로 건설기계대여금을 합산하여 200만원 이상인 경우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의 경우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함에 따라 단가계약내에서 발생하는 건설기계대여금의 경우 동일한 사업자가 현장을 달리하여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합산하여 200만원이 초과할 경우에는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함.

9. 본사소속 일용근로자가 자회사에서 근무하게 될 경우 건강보험 자격취득 여부?

- 시공중인 건설현장이 사후정산대상공사가 아닐 경우 본사소속 직장가입자 기준을 적용하여 월60시간 이상 근로시 자격취득신고를 해야 함. 자회사에서 시공중인 건설현장에 투입될 경우 자회사 또한 별도의 법인사업체이므로 사후정산 대상공사 여부 및 직장가입자 기준 적용여부 등을 따져 건강보험 자격취득신고를 하여야 함.



10. 건설업 면허 대여시 제재사항 및 건설업 대여로 인해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경우 동일 건설업을 등록시 제한이 있는지 여부?

-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에서 건설업 대여행위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시 동법 제83조에 의거 해당 건설업은 등록말소 처분되며 동법 제96조에서는 대여업자와 그 상대방, 알선한 자 등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건설업 면허 대여 또는 알선 등으로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해당 건설업을 등록할 수 없음.

1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시행일자 및 교육대상과 교육기관은?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현장에서 건설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실시하던 안전보건교육을 대체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된 전문교육기관에서 건설일용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 지식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건설현장 최초 신규 채용시 1회(4시간) 실시하는 교육을 말함.
- 2012. 6. 1일부터 건설공사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되었으며, 2014. 12. 1일부터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되었으며, 교육위탁기관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함. 회원사에서는 건설일용근로자 채용시 교육이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채용해야 함.

12. 적격심사 서류제출 기한 및 낙찰 결정 후 계약체결 기한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공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3장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는 계약상대자가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토록 규정하고 있음.



특별기고



임 남 기
동명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밀려오는 BIM 파도 마냥 피해갈 것인가? 적극 수용하여 업계를 리드할 것인가?

건설시장에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건물정보화모델링)의 악어로서 기존의 평면형 2차원의 2D도면을 공간 입체형으로 나타내는 3D도면의 단계를 넘어서 도면에 건물의 다양한 정보를 추가하여 모델링하는 방법, 이를 확대하여 정보가 추가되면, 4D BIM-3D에 시간관련 정보를 추가하여 공정관리가 가능한 단계, 5D BIM-4D에 비용정보를 추가하여 사업비관리가 가능한 단계, 6D BIM-5D에 데이터관리 기법이 추가되어 건축공사의 전체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단계의 BIM) 바람이 거세게 몰려오고 있다. 전세계적인 건축 및 건설의 정보화의 결정체인 BIM은 미국과 북유럽을 중심으로 활성화되었는데 미국은 GSA(General Service Administration)를 중심으로 2008년부터 공공 및 교육시설 등 연방정부 사업에 BIM 납품이 의무화 되었으며, 영국도 2011년부터 의무화 되어 있으며,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독일 등에서도 거의 시기만 다를 뿐이며, 아시아에서도 일본, 홍콩, 싱가포르, 중국 등에서도 건설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적용의 폭이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8년부터 공공건축물을 중심으로 시범적 용한 후 2012년부터 조달청 발주 500억원以上に 의무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였으며, 2016년부터는 모든 조달청 발주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기로 확정된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적 결정과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대비가 무척 부족한데 거의 95% 이상의 실적을 차지하는 수도권을 제외하면 전국적으로 BIM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가진 업체는 거의 전무한 현실이다. 실제로 우리 지역인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BIM이 적용된 사례도 해운대의 부산영성센터, 북항의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진주의 LH본사사옥 정도 뿐이며, 거의가 설계단계에서 의무 적용되었거나 다양한 외부의 곡선부에 대한 시공성 검토를 비롯하여 기계 및 전기설비와의 간섭 등의 용도로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 적용된 진주의 LH본사 사옥에서는 설계단계 이후인 시공단계에서 필요성을 정확히 인식하여 BIM 발주 지침을 상세히 설정한 후 예산을 제대로 책정하는 수행의지가 반영된 Case로서 특별히 시공단계 Data의 정확한 관리를 통한 준공 BIM자료를 유지관리단계에서 활용하려는 계획은 대단히 미래지향적이라 할 수 있다.

첨단의 정보를 빨리 다양하게 접하는 메이저 건설회사나 건축사 사무실이 이러한 진대 전문건설업체들은 당연히 이런 분야에 무관심할 것이라 예상은 하지 않아야 한다. 어디나 Early Bird가 있게 마련이다. 전문건설 분야인 철골공사업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Shop Drawing 작성을 3D로 그리면서 입체 디테일을 통하여 접합부의 간섭과 작업성을 판단함은 물론 철골물량을 자동 산출하고 VE(Value Engineering)의 악어로 가치공학이라고 하는데 제품이나 서비스의 기능의 향상과 Cost를 절감하려는 다양한 수단을 실시하려는 활동이 다양하게 적용되어 왔다. 이를 모델로 삼아 최근에는 철근콘크리트업계에서도 철근 Shop Drawing 작성을 3D로 그리면서 시공성 등을 분석하는 등의 시도가 지역 내에서도 시작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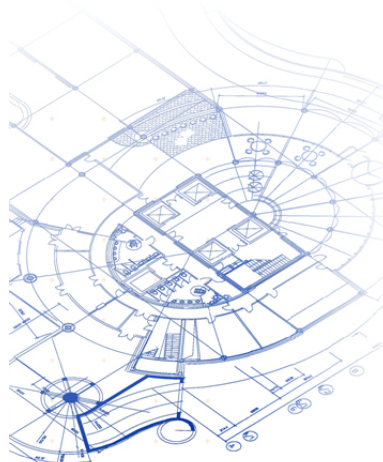
한편 주방 실내인터리어를 리드하는 한생에서는 기존 정보의 공용화와 표준화를 기반으로 보편적인 플랫폼과 기술을 사용하여 프로세스의 자동화와 단순화를 통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도입한 혁신시례를 자랑하고 있다. 부엌 제품의 특성상 완성품질은 생산품질이 아닌 설치된 시공품질에 좌우되고, 5~60품목으로 구성된 제품은 Make to Order로 결정되므로 고객의 니



즈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고객상담 과정에서 시공까지를 10일 이상 단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① 모든 제품을 철저히 분석하여 부품단위-조립단위-설계단위-발주단위로 구분하여 모델링한 후 GD(L형상을 정의하는 스크립트) 개발전략을 세우고, ② 단위제품이 파생할 수 있는 사이즈, 칼라, 재질, 옵션 등을 정리해서 기준정보인 마스터 데이터 모델링 계획을 세우고, ③ 제품상단, 설계, 견적 프로세스를 제품설계관점이 아닌 제품시공관점에서 행동분석과 필요한 업무의 룰을 설정하여 Add-on 프로세스전략을 세워 하나의 개발 프레임워크 차원에서 시스템을 개발하였다고 한다. 이들의 과정을 한생에서 직접 수행한 것은 아니며,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비즈니스 프로세스 기반의 응용 솔루션의 개발을 통하여 시스템의 차별화를 비즈니스 차별화로 특화된 시스템으로 무장함으로써 시장경쟁력을 선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견적을 하는 운영업체에서도 기존의 운영 경험을 활용한 다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량산출업무와 도면적정성 검토업무의 프로세스를 공유하면서 양방향성 검토기능을 도입하여 2D 도면을 근거로 수행하던 견적업무를 5D 단계로 끌어올리는 성과로 업계를 리드하고 있다. 그 외에도 친환경 건축물의 평가나 시뮬레이션을 위한 다양한 툴이 개발되어 모델링 과정에서 BEM(Building Energy Modeling) 모델작성, 시뮬레이션 조건설정, 에너지 성능평가의 단계로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그 외 건설업체가 아닌 전혀 다른 분야인 전자제품이나 금공 등에서도 BIM 기술 중 부분적으로 유용한 기술을 활용하려는 아이디어의 차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여 우리 지역의 동명대학교에서는 지방대학특성화사업(CK-1, Creative Korea-1은 지방대학, 2는 수도권 특성화 사업으로 기존의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처럼 인식하던 명문대학의 관점을 학교별로 특화된 것에서 찾을 수 있게 하려는 국가사업임에서) "슈퍼컴퓨팅 가상화 기반 창의적 융합 BIM 인재양성사업단"을 구성하여 업계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 다행이다. 중소기업 업체들이 대부분 지역 내에서 BIM을 언제 활용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직원교육은 물론 S/W의 구입 등에서 부담이 크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학교에 구축된 인프라인 슈퍼컴퓨터를 전국 최초로 가상화 하여 필요한 연결망만 확보하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서 수도권에 집중된 교육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지역 공식 교육기관으로써의 지위를 확보하고 BIM 교육을 상시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NVIDIA GRID 시스템을 활용한 그래픽 및 시뮬레이션 분야에서도 특별한 장점을 발휘할 것으로 교육용을 통한 실무분야로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여 창의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인재들이 양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세계 최고의 업체인 AUTO CAD사와는 모든 S/W를 무상으로 지원받아 공식 자격증 교육원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러한 교육시설의 운영을 위한 강사진은 수도권에서 실무 및 교육경력을 겸비하거나 전문교육기관과의 협조를 통하여 인력을 확보하여 학교의 강의와 대내외 강의를 진행하면서 지역 내의 업계에서 수요가 발생할 경우 교과 및 비교과 과정을 통하여 양성된 학생들과 함께 BIM 실무를 직접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려는 점은 지역 건설업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처럼 세상은 지속적이고 혁신적으로 변화되고 있으나 동종업계가 변화되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다면 본인이나 회사를 타인이나 다른 회사와 차별화되지 변화시켜야 한다는 자세로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기술을 여러 전문건설철 회원들께서 느끼는 추수상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인 BIM(Business Innovation Method, 사업혁신도구)로 활용함이 어떨지요?



특별기고



윤 경 일
한끼의식사기금 이사장

행복과 나눔

아프리카에서 연구해 오던 유럽여성학자가 원주민 친구에게 자신이 아끼던 목걸이를 선물로 주고 떠났다. 몇 년 후 다시 현지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목걸이를 계속 간직하고 있는지 궁금하여 원주민 친구에게 물었더니 목걸이를 해체하여 이웃에게 구슬을 하나씩 나누어 주었다고 말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아름답고 귀한 것은 나누어야 한다고 믿음 때문에 원주민 친구는 예쁜 목걸이를 해체해서 사람들에게 하나씩 갖게 했던 것이었다.

사람마다 사는 방식은 서로 다르다. 오직 출세와 성공을 위하여 열심히 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과 행복을 위하여 열정을 쏟는 사람도 있다. 사람마다 장단점이 다르고 능력도 차이가 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다. 공감, 연민, 배려와 같은 가치들은 기본적으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졌다. 그런데 실제 이것들마저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서로 이해의 폭이 좁아 들면서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경향 때문이다.

고가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멋진 승용차를 타면서 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런 상태를 안락한 삶이라 말하지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행복이란 즐거운 차원을 넘어서서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가 충분히 채워진 상태이다. 하버드대학의 행복학 강사 탈 벤 사하르는 행복을 '즐거움과 의미의 포괄적인 경험' 이라고 정의한다. 행복함이란 긍정적인 감정과 삶의 의미를 함께 느끼는 단계이다. 행복의 문은 사람과 사람사이에 놓여진 다리를 건너감으로서 발견할 수 있다. 그들은 타인들과 교감하기를 원하면서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나눔을 통하여 더 큰 만족을 얻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지 않는가. 우리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애정과 친밀감을 나눌 때 서로 외롭지 않다. 나누는 것이 자신의 소유물을 내어준다는 생각 때문에 손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착각이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더 큰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낮에 바쁘게 일한 후 밤이 되어 마음을 나눌 대상이 없으면 고독해진다. 나눔이 없는 세상은 별이 없는 밤하늘과 같다.

필자의 단체인 '한 끼' 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 '한 끼' 의 의미는 나눔이다.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농부의 수고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밥을 먹을 수 있었는가? 이렇듯 만물은 서로가 서로에게 신세를 지며 살아간다. 한끼의식사기금은 서로에게 밥이 되어주는 세상을 만들고자 이 세상에 태어났다. 국제구호단체로서 가난과 기아로부터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어, 모두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최근 국제청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사회단체 기부금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쉬운 점은 약80%가 종교단체기부금으로 편향되어 있다. 부산, 울산, 경남의 기업들은 내수침체와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실적부진으로 2013년 기업규모가 전년도에 비해 35%나 감소한 것으로 나왔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개인들의 기부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어떤 부부는 아이의 돌잔치 때 들어온 부조금 전액을 기부금으로 내놓았고, 한 가족은 생일행사비용을 절반으로 줄여 의미있는 일에 써 보자며 본 단체에 기부금으로 내놓았으며, 막 의사면허증을 받고 인턴을 시작하여 받은 첫 월급의 일부를 기부한 젊은 의사도 있었다. 이유는 행복이리 의사로서 마음가짐을 올바로 하고 싶어서였다. 일면식도 없는 건설회사 사장님께서도 잉여 수익이 생겨 사회에 공헌하고자하는 마음에서 억만여 원의 돈을 내 놓았다. 참으로 친밀감이 가는 나눔들이다.

사람이 탈진하면 수액을 공급받고 원기를 회복한다. 사고로 출혈이 심각하면 긴급수혈을 받아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모든 행위가 서로간의 도움과 나눔을 통하여 원만하게 유지하고 있다. 만약 태양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식물이 광합성을 할 수 없어 초식동물의 먹이가 없어져 죽고, 이어 육식동물도 차례로 죽게 되어 인류 역시 생존할 수 없게 된다. 태양은 세상만물들에게 서로 의지하며 살라는 우주의 커다란 선물이다. 우리는 많이 가진 사람이나 적게 가진 사람이나 자기방식대로 나누고 있을 따름이다. 그러므로 나눔은 자연의 질서이다. 맛있는 빵을 만들려면 밀가루 반죽이 잘 어우러져야 하듯 사람들끼리도 잘 섞여야 행복한 삶을 맛볼 수 있다.

고 김수환 추기경은 '서로에게 밥이 되어주십시오' 라는 말을 자주 했다. 밥으로 표현되는 사랑, 나눔, 배려. 세상만물은 서로에게 신세를 지며 살아간다. 수학의 사칙연산을 인생에 적용해 보면 재미있다. 기쁨은 더하고 싶고, 슬픔은 빼고 싶고, 행복은 곱하고 싶고, 고통은 나누고 싶어진다. 수학의 공식은 더하고 곱할수록 양이 늘어나지만 인생의 공식은 그렇지 않다. 나누고 뺄수록 더 풍요로워진다. 이런 이치를 새기면서 살면 어떨까?



과세체제 개편 요약



선경세무회계사무실
공인회계사 한범규

■ 종전 신고·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 왔으나, 2014년 이후 소득발생분¹⁾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체제가 전면 개편 되었습니다.

-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지방 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세액공제·감면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공제·감면한 후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 하도록 규정

종전 <부가세 방식>	변경 <독립세 방식>
국세 결정세액 x 부가세율(10%) ⇒ 지방소득세	국세 과세표준 x 지방소득세율 ²⁾ - 공제·감면 ⇒ 지방소득세

1) 2014.1.1 이후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자가 성립하는 소득 발생분
2) 지방소득세율: 국세 세율의 10% 수준 누진세율 체계

■ 과세체제를 개편하면서 일부 세목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종전 <부가세 방식>	변경 <독립세 방식>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개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

■ 개인지방소득세(한자 소득세분)은 2016년 말까지 종전과 같이 국세청에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함께 신고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단, 달라진 과세체제에 따라 「지방세관계법」을 확인하여 세액 산출

■ 개인납세자에 대한 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에 관한 사항을 개인 지방소득세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 3장 지방소득세 특례 (지특법 §93~§176)]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는 종전과 같은 부가세 방식을 유지하되, 2015.1.1부터 내국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경우 특별징수하여 납부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법 §103조의29]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1. 시행시기

■ '14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신고·납부시 개편된 과세체제 적용 (지법 부칙 §2)

- 예를 들어 사업연도가 2013.6.1 ~ 2014.5.31인 경우 구 지방세법(법률 제 1215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적용
- * '14년 이전 사업연도분의 결정·결정 및 수정신고는 구 지방세법(법률 제 1215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적용



2. 과세표준과 세율

종전 <부가세 방식>		변경 <독립세 방식>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법인세 총결정세액	10%	→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	과세표준 x 1% 200만원 + (2억원 초과 금액 x 2%) 3억9,800만원 + (200억원 초과금액 x 2.2%)

3. 세액 공제·감면

종전 <부가세 방식>	변경 <독립세 방식>
법인세 결정·결정, 수정신고, 신고기한 연장시: 법인세 신고 + 1개월 청산소득: 법인세 신고 + 1개월 (지법 §100조의27)	법인세 결정·결정, 수정신고, 신고기한 연장시*: 법인세 신고기한과 동일 청산소득: 법인세 신고기한과 동일

* 단, 조합법인 등 과세특례: 조특법 §72①의 법인세 세율의 10% (지특법 §167)

4. 수정신고등 신고기한

종전 <부가세 방식>	변경 <독립세 방식>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공제·감면을 반영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소득세 산출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 계산하여야 하나, 현재 과세표준 이후 세액 공제·감면 규정 없음*

* 단, 외국법인 신고기한 연장은 종전과 동일: 법인세 신고 + 1개월 (지법 §100조의27)

5. 신고특례

종전 <부가세 방식>	변경 <독립세 방식>
신고없이 납부한 해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 (구 지방세법 §91⑤) 당초 신고세액의 1/10미만 변동세액 발생시 ⇒ 발생 사업연도 소득 확정신고시 가감가능	신고 없이 납부한 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 부과 (해당 조항 삭제) 당초 신고세액의 1/10 미만 변동세액 발생시 ⇒ 발생시 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결손법인도 신고해야 함

6. 제출서류

종전 <부가세 방식>	변경 <독립세 방식>
①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신고서 ②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안분계산내역 및 명세서	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미 세액 신고서 ②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 및 명세서 ③ 재무상 태표 ④ 포괄손익계산서 ⑤ 이익잉여금조분(결손금처리)계산서 ⑥ 세무조정계산서 ⑦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서류



회원사 현황

신규회원가입업체 현황

(2014년 10월 1일 ~ 12월 31일)

상 호(대표자)	주 소	상 호(대표자)	주 소
 (주)서우산업 이 준 회	부산 사상구 광장로37번길 13 5층 (해법동, 대림빌딩) T: 051-327-4120 보유업종 : 지붕판공 · 건축물조립	 (주)송원강건 조 영 봉	부산 북구 학사로17번길 19 102호 (화명동, 중도빌딩) T: 051-361-3127 보유업종 : 강구조물
 (주)제이씨건설 김 정 국	부산 수영구 수영로 759 606호 (수영동, 알파오피스텔) T: 051-818-3171 보유업종 : 토 공 철근 · 콘크리트	 (주)제이앤씨 하 현 정	부산 해운대구 청사포로 27 상가동 303호 (좌동, 경남신경아파트) T: 051-717-3435 보유업종 : 실내건축
 청우에이스(주) 류 이 현	부산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48, 11층 (우동, 에이스하이테크21) T: 051-912-6661 보유업종 : 상 · 하수도설비	 (주)테아월드 신 수 정	부산 북구 화명동 2275-6 성문타워 1동 603호 T: 051-338-7858 보유업종 : 조경식재 조경시설물설치

부산 전문건설업체 등록현황

(2014년 12월 31일 기준)

지 역	업체수	등록수	지 역	업체수	등록수	지 역	업체수	등록수
중구	23	53	남구	94	130	북구	69	89
동구	59	128	금정구	193	294	사상구	104	130
서구	24	28	연제구	133	203	강서구	115	160
시하구	60	79	해운대구	181	265	기장군	156	224
영도구	22	32	수영구	96	135			
동래구	171	226	부산진구	169	251	합계	1,699	2,452

부산 진출·입 전문건설업체 현황

(2014년 10월 1일 ~ 12월 31일)

전출업체 현황	전입업체 현황
개금토건(주) (대표 : 최영식, 경남)	(주)가람 (대표 : 김종성, 경남)
(주)경천건설 (대표 : 박태숙, 경남)	(주)경성스틸 (대표 : 김명복, 경남)
구구수질환경개발(주) (대표 : 이영숙, 경남)	녹야건설(주) (대표 : 이수현, 충북)
(주)디아이가발 (대표 : 이영수, 경기도)	(주)디아이가발 (대표 : 손용, 경남)
(주)삼빈산업 (대표 : 정길용, 경기도)	백녕건설(주) (대표 : 추국진, 경남)
신일공영(주) (대표 : 서임옥, 서울)	(주)보안맨씨 (대표 : 정영숙, 경남)
(주)제이씨건설 (대표 : 김정국, 경기도)	부일건설(주) (대표 : 이용국, 경북)
초석건설산업(주) (대표 : 최균영, 전남)	(주)상록건설 (대표 : 백고운, 울산)
	성경건설(주) (대표 : 정경아, 경남)
	(주)송원강건 (대표 : 조영봉, 경남)
	(주)송학엔테크 (대표 : 이상학, 경북)
	에코랜드(주) (대표 : 강영란, 경남)
	(주)인지건설 (대표 : 최상식, 경기도)
	제이원건설(주) (대표 : 허승, 경남)
	(주)평진산업개발 (대표 : 김용철, 경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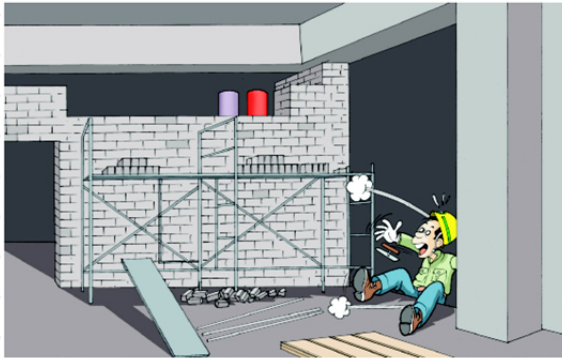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 진단 및 대책

지난호에 이어 건설현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산재사고와 관련하여 주요 재해 사례를 소개하고 회원사에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사례별 안전대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개구부 단부에서 떨어져 사망			
공 사 명	○○○○○○ 본사 지방이전사업	발생일시	2013.10.11(금) 06:40분경
재해형태	떨어짐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경남 진주시 문산읍	공사규모	연구동, 행정동, 본관 3개동 건축공사

재해개요
2013. 10. 11.(금) 06:40분경 진주시 문산읍 혁신도시 개발지구내 (주)○○종합건설에서 시공하는 ○○○○○○ 본사이전사업 현장에서 협력업체 ○○○건설 소속 피재자(남, 조적공, 7세)가 5층 내벽 조적작업을 준비하던 중 연구동 open구간에서 2층 바닥(H=13.5m)으로 떨어져 사망한 사고임.

재 해 상 황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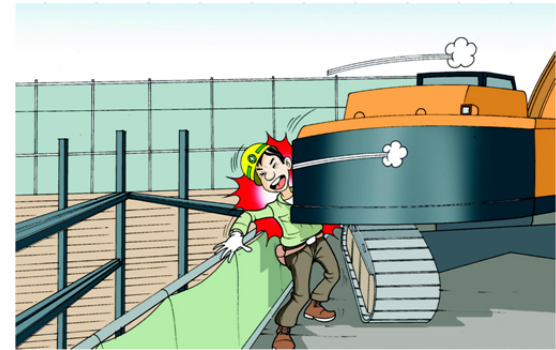


안전대책	<p>○ 추락방지조치 철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구부 및 작업발판 단부 등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에는 안전방망 또는 안전간 등을 설치하고 작업하여야 함
-------------	-------------------------------------------------------------------------------------------------------------------------------------------

복공판 상부에서 작업 상황 확인 중 굴삭기 후미에 끼임			
공 사 명	세종시 ○○프라자 신축공사	발생일시	2013.12.21(토) 09:20분경
재해형태	끼임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세종시 도담동	공사규모	지하2층, 지상8층

재해개요
2013. 12. 21(토) 09:20분경 세종시 도담동 소재 세종시 ○○프라자 신축공사 현장 1층에서 피재자는 복공판 단부에 서서 지하의 토공량을 확인 중 덤프(25Ton)트럭에 상치하기 위하여 회전을 하던 굴삭기(1.0M)의 좌측 후미와 안전간간 지주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재 해 상 황 도



안전대책	<p>○ 출입금지 조치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중 근로자와 접촉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출입금지 조치를 하여야 함 - 차량계 건설기계 유도자를 배치하고, 유도자의 신호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p>○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계획서를 준수하여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	-------------------------------------------------------------------------------------------------------------------------------------------------------------------------------------------------------------------------------------------------------------------------------------------------------------------

건설용어 바로쓰기

올바른 우리말 사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하지만 우리는 주위에서 잘못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생활속에서 사용되는 잘못된 언어표현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좀처럼 고쳐지지 않고 있다. 건설용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건설현장에서는 일본어식 표현이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건설현장에서 올바른 우리말 사용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자주 사용되는 잘못된 일본어식 건설용어들을 알아보고 바른 우리말 표현을 정리해봤다.

건설용어			
일본어	우리말	일본어	우리말
가쿠목	각목	시메기리	물막이
가디와꾸	가무집	리아까	손수레
가빠	바웃, 달개	마끼자	출자, 주루말린 자
고바이	올매, 경사	바게스	양동이
공구리	콘크리트	바라시	해체, 뜯어냄
구루마	손수레	빈도 띠	밴드
구배	올매, 경사	보로고	블록
기레베시	조각, 토막	보루박스	종이상자
기리까이	대체, 바꾸기	빠루 노루빌	못 뺀기
나라시	고르기, 길들이기	베바	사포, 연마지
노기다	노동자, 막일꾼	아다리	맞달기, 적중, 맞음
노리	비탈	아시바	비계, 비계발판
노미	꿀, 정	아리끼리	도급주기
다라이	큰대야, 함지	오시마리	일을 종결지음
다이	(받침)대	오야	우두머리, 책임자
다이루	타일	오야봉(지)	책임자, 어른
단까	들것	오함마	대형해머
데코보고	요철	와꾸	테, 틀, 울거미
데나오시	재순질	와리깡	활인
데마	흙	유도리	여유
데모도	조공, 허드렛군	켓깡다	절단기
덴뎡	철판, 우두머리, 두목	히고방	판자집
돈내기	도급, 하청	함바	현장식당
스메아	예비	핫바리	등급이 낮은 제품
시다	보조원	화이바	안전모
시마이	끝냄	혹구	갈고리

건설업 양도·양수 절차

01



건설업양도 의결

02



건설업 양도계약서 작성

03



양도내용의 공고 (신문 및 우리협회)

04



공제조합 의견서

05



건설공사 발주자 동의 (시공중인 공사)

06



건설업 양도신고서 제출

07



건설업 양도신고 적합성 심사

08



건설업 양도신고 수리 및 양도신고 사실공고

09



우리협회 양도신고 사실통보서 제출

<제출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사본(개인에서 법인 전환의 경우 폐업사유가 명시된 폐업사실 확인서)
- 건설공사 현황 및 발주자 동의서
- 건설업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 양도·양수 공고문(일간지 및 인터넷) 사본
- 주주총회(이사회)결의서
- 공제조합 의견서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건설업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공인회계사 또는 공인진단기관에서 진단)
 - 개인·법인, 신규·기존 구분 없이 전체제출
- 건설기술자(기능사)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증 사본
- 고용보험 가입확인서 등
- 건물등기부 등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장비 및 선박 보유 등록증 및 보유내역(철강재, 수중, 석도설치, 준설)

※ 협회 홈페이지 [www.kosca21.or.kr → 건설업 등록·관리 → 건설업 신규·양도·합병 등]

코스카레터 창간호를 읽고..

코스카레터를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나, 아쉬웠던 부분, 그리고 앞으로 새롭게 다뤘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 해주세요!

독자의견은 메일(kosca21@kosca.or.kr)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도시공사 총무팀
박재철 과장

안녕하세요 부산도시공사 총무팀 박재철입니다.
전문건설업 회원사들의 권익과 활발한 소통을 위한 값진 결실이 '코스카레터'라는 멋진 잡지로 탄생하게 됨을 늦었지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막연히 인식하고 있던 전문건설협회가 해당분야에의 심도 깊은 세미나, 다양한 산업시찰, 지자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건설업체 회원들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랑 나눔 음악회, 한끼의 식사기금 등을 부산지역에 밀착된 사회공헌을 하고 있음을 새로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토록 많은 활동을 하는 협회의 위상을 '코스카레터'를 통해 널리 홍보하고, 부산 시민 모두가 협회에 대해 친숙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더 다가서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한편, 잡지를 보는 작은 재미인 별자리 운세, 지역맛집추천 같은 코너도 넣으면 흥미를 좀 더 불러올 듯 합니다.
건설업계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새로이 탄생한 '코스카레터'를 열렬히 응원하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보광
박미진 과장



연히 사무실에 도착한 책을 읽어보다 건설업무에 필요한 법령과, 조달청 적격심사 기준 등 건설업무에 유익한 정보가 많아 책의 제목을 다시 보니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새로 창간한 코스카레터라는 소식지더라구요.
평소에도 협회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잘 활용하고 있던지만, 책 한권에 모든 내용을 담아 여러 자료를 찾아보지 않아도 되고 잘 알지 못했던 내용을 자세히 알수 있어 업무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았습니다.

가끔씩 협회에 방문하거나 궁금한 것이 있어 전화로 문의를 드리면 성실히 답해주시고 항상 밝은 목소리로 응대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했지만, 코스카레터를 보면서 코스카에서 회원사들을 위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더욱더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금은 2호까지 밖에 없지만 책상위의 책꽂이가 코스카레터로 가득차질 바래봅니다.

코스카레터 잘 읽으셨나요? Quiz를 풀고 정답을 맞춰주세요~



독자퀴즈

지난호 독자퀴즈 정답자 발표

- 부산도시공사 박재철
- (주)대영디엔비건설 김경희

지난호 독자퀴즈 정답

- 5년

Q 국토교통부는 2013년 6월 19일부터 건설기계대여대금 체불방지를 위하여 건설업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현장별로 1건의 건설기계 대여금액동일한 건설기계대여업자와 2건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별로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건설기계대여 계약금액은 얼마 이상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협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 팝업창을 통해 응모(기간 : 2015. 2. 27(금)까지)하시면 추천하여 (정답자에 한함)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우리는 왜 IBK카드인가!

우리협회에서는 회원의 복지 및 편의 제공을 위해 지난 3월 IBK기업은행과 제휴를 맺고 협회 회원사만이 누릴 수 있는 맞춤형 특화카드인 '대한전문건설협회-IBK 제휴카드'를 출시하였습니다!

제휴카드의 혜택

01. IBK기업은행의 기본서비스 제공 외 대출금리 및 환율우대 등 특화된 서비스 제공
02. 기존 카드보다 많은 포인트 적립(제휴카드 최대 0.5%, 기존카드 0.3%)
03. 세무지원 서비스(부가세환급지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 현재 IBK은행과 거래하시는 회원사는 협회로 연락주시면 바로 전문건설인 맞춤형 카드로 변경해 드립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051-633-0260)**

